

---

#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



보건복지부

## 목 차

<b>제1장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b>	<b>8</b>
제1절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	8
1. 신고접수 .....	8
1) 신고접수 .....	8
2) 시도별 신고접수 .....	9
2. 신고자 유형 .....	10
1) 신고자 유형 .....	10
2) 시도별 신고자 유형 .....	11
제2절 아동학대 사례판단 .....	13
1. 사례판단 .....	13
1) 사례판단 결과 .....	13
2)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5개년) .....	14
2. 피해아동 발견율 .....	15
제3절 아동학대 사례 분석 .....	16
1. 인구사회학적 요인 .....	16
1) 피해아동 .....	16
가. 피해아동 성별 .....	16
나. 피해아동 연령 .....	17
다. 피해아동 가족유형 .....	18
2) 학대행위자 .....	19
가. 학대행위자 성별 .....	19
나. 학대행위자 연령 .....	19
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20
2. 아동학대사례 발생현황 .....	22
1) 아동학대 발생장소 .....	22
3. 아동학대사례 유형 .....	23
1)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	23
2) 아동학대사례 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차분석 .....	24
가.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	24
나.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	24
다.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25
4.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상황 .....	25

1) 피해아동 상황 .....	25
가. 피해아동 전체 사례종결 현황 .....	25
나.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피해아동 보호 현황 .....	28
2) 학대행위자 상황 .....	30
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조치 현황 .....	31
나.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결과 .....	35
5. 서비스 제공 현황 .....	40
6. 재학대 사례 .....	42
1) 재학대 사례 현황 .....	42
2)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	42
가.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	42
나.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	43
3)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	44
가.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	44
나.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	44
4)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45
5)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 유형 .....	46
가.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	46
6)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상황 .....	47
가.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상황 .....	47
나.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상황 .....	48
제4절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	49
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	49
2) 연도별 신고자 유형 .....	50
3)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	53
4) 연도별 피해아동 발견율 .....	54
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	55
6)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55
7)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	57

## **제2장 아동학대 사례분석 ..... 59**

### **제1절 아동학대 사망사례 분석 ..... 59**

1. 아동학대 사망사례 현황 .....	59
1) 사망사례 피해아동의 일반적 특성 .....	60
가. 사망사례 피해아동 성별 .....	60
나. 사망사례 피해아동 연령 .....	60
다. 사망사례 피해아동 교육기관 .....	60
2) 사망사례 피해아동의 환경적 특성 .....	61

가. 사망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	61
나. 사망사례 피해아동 가구소득 .....	61
다. 사망사례 피해아동 국적 및 다문화가족 여부 .....	62
3)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의 일반적 특성 .....	62
가.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	62
나.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	63
다.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최종학력 .....	63
라.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직업 유형 .....	64
4)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의 환경적 특성 .....	64
가.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월 소득 .....	64
나.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국적 및 다문화가족 여부 .....	65
5)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65
가.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동거 여부 .....	65
나.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	66
6) 사망사례 발생 현황 .....	66
가. 사망사례 지역별 발생 현황 .....	66
나. 사망사례 신고자 유형 .....	67
7) 사망사례의 아동학대 유형 .....	67
8)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재판(사건처리) 결과 .....	68
부 록 .....	69
- 용어 설명 .....	69

[표 목차]

## 제1장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 제1절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표 1-1-1> 신고접수 건수 .....	8
<표 1-1-2> 시도별 신고접수 건수 .....	9
<표 1-1-3> 신고자 유형 .....	10
<표 1-1-4> 시도별 신고의무자 신고자 유형 .....	11
<표 1-1-5> 시도별 비신고의무자 신고자 유형 .....	12

### 제2절 아동학대 사례판단

<표 1-2-1> 사례판단 결과 .....	13
<표 1-2-2>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	14
<표 1-2-3> 피해아동 발견율 .....	15

### 제3절 아동학대 사례 분석

<표 1-3-1> 피해아동 성별 .....	16
<표 1-3-2> 피해아동 연령 .....	17
<표 1-3-3> 피해아동 가족유형 .....	18
<표 1-3-4> 학대행위자 성별 .....	19
<표 1-3-5> 학대행위자 연령 .....	19
<표 1-3-6>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20
<표 1-3-7> 아동학대 발생장소 .....	22
<표 1-3-8>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	23
<표 1-3-9>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	24
<표 1-3-1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	24
<표 1-3-11>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25
<표 1-3-12> 피해아동 전체 사례종결 현황 .....	25
<표 1-3-13> 피해아동 상황 - 보호조치 유형별 .....	26
<표 1-3-14> 피해아동 상황 - 분리보호 유형별 .....	26
<표 1-3-15> 피해아동 상황 - 분리보호 후 보호 상황 .....	27
<표 1-3-16> 피해아동 상황 - 즉각분리(유형별 포함) .....	27
<표 1-3-17> 피해아동 상황 - 즉각분리 후 보호 상황 .....	28
<표 1-3-18>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현황 .....	28
<표 1-3-19>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현황 .....	29
<표 1-3-20>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의 거주 기간 .....	29
<표 1-3-21>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 거주지 .....	30

<표 1-3-22> 학대행위자 상황 .....	30
<표 1-3-23>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상황 .....	31
<표 1-3-24> 아동학대처벌법 조치사례 비율 .....	31
<표 1-3-25> 피해아동 응급조치 현황 .....	31
<표 1-3-26> 임시조치 결정 현황 .....	33
<표 1-3-27>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현황 .....	34
<표 1-3-28>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결과(1) .....	35
<표 1-3-29>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결과(2) .....	36
<표 1-3-3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결과 .....	39
<표 1-3-31>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 .....	40
<표 1-3-32>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	41
<표 1-3-33> 홈케어플래너 서포터즈 서비스 제공 실적 .....	41
<표 1-3-34> 재학대 사례 발생 건수(3개년) .....	42
<표 1-3-35>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	42
<표 1-3-36>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	43
<표 1-3-37>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	44
<표 1-3-38>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	44
<표 1-3-39>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45
<표 1-3-40>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	46
<표 1-3-41>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상황 - 보호조치 유형별 .....	47
<표 1-3-42>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상황 - 분리보호 유형별 .....	48
<표 1-3-43>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상황 - 분리보호 후 보호 상황 .....	48
<표 1-3-44>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상황 .....	48

#### 제4절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표 1-4-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	49
<표 1-4-2> 연도별 신고자 유형 .....	50
<표 1-4-3>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	53
<표 1-4-4> 연도별 피해아동 발견율 .....	54
<표 1-4-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	55
<표 1-4-6>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56
<표 1-4-7>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	57

## 제2장 아동학대 사례분석

### 제1절 아동학대 사망사례 분석

<표 2-1> 아동학대 사망사례 발생 현황 .....	59
<표 2-2> 사망사례 피해아동 성별 .....	60
<표 2-3> 사망사례 피해아동 연령 .....	60

<표 2-4> 사망사례 피해아동 교육기관 .....	61
<표 2-5> 사망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	61
<표 2-6> 사망사례 피해아동 가구소득 .....	62
<표 2-7> 사망사례 피해아동 국적 및 다문화가족 여부 .....	62
<표 2-8>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	63
<표 2-9>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	63
<표 2-10>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최종학력 .....	63
<표 2-11>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직업 유형 .....	64
<표 2-12>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월 소득 .....	64
<표 2-13>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국적 및 다문화가족 여부 .....	65
<표 2-14>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동거 여부 .....	65
<표 2-15>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	66
<표 2-16> 사망사례 지역별 발생 현황 .....	67
<표 2-17> 사망사례 신고자 유형 .....	67
<표 2-18> 사망사례의 아동학대 유형 .....	68
<표 2-19>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재판(사건처리) 결과 .....	68

[그림 목차]

## 제1장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 제1절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그림 1-1-1] 신고접수 건수 .....	8
[그림 1-1-2] 신고자 유형 .....	11

### 제2절 아동학대 사례판단

[그림 1-2-1] 사례판단 결과 .....	13
[그림 1-2-2]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	14

### 제3절 아동학대 사례 분석

[그림 1-3-1] 피해아동 성별 .....	16
[그림 1-3-2] 피해아동 연령 .....	18
[그림 1-3-3] 피해아동 가족유형 .....	18
[그림 1-3-4] 학대행위자 성별 .....	19
[그림 1-3-5] 학대행위자 연령 .....	20
[그림 1-3-6]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21
[그림 1-3-7]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	23
[그림 1-3-8]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의 거주 기간 .....	29
[그림 1-3-9] 피해아동 응급조치 세부 내용 .....	32
[그림 1-3-10] 임시조치 결정 세부 내용 .....	33
[그림 1-3-11]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세부 내용 .....	35
[그림 1-3-12]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	43
[그림 1-3-13]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	43
[그림 1-3-14]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	44
[그림 1-3-15]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	45
[그림 1-3-16]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46
[그림 1-3-17]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	47

### 제4절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그림 1-4-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	49
[그림 1-4-2]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	53
[그림 1-4-3] 연도별 피해아동 발견율 .....	54
[그림 1-4-4]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	55
[그림 1-4-5]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57
[그림 1-4-6]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	58

# 제1장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 제1절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 1. 신고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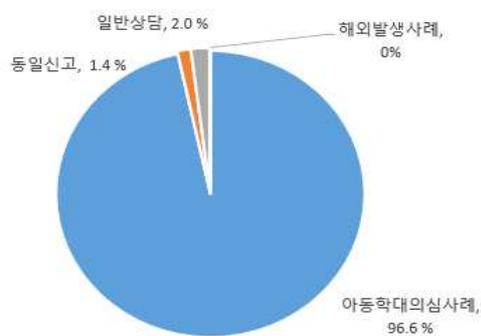
#### 1) 신고접수

2021년 집계된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총 53,932건으로 전년\* 대비 약 27.6%로 크게 증가했다. 이 중, 아동학대의심사례는 52,083건으로 전체 신고접수의 96.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외 동일신고는 768건(1.4%), 일반상담은 1,077건(2.0%)이었다.

<표 1-1-1> 신고접수 건수

(단위: 건, %)

아동학대의심사례	동일신고**	일반상담	해외발생사례	계
52,083 (96.6)	768 (1.4)	1,077 (2.0)	4 (0.0)	53,932 (100.0)



[그림 1-1-1] 신고접수 건수

\* 2020년 기준 전체 신고접수 건수 42,251건

\*\* 최초 신고접수 이후에 동일한 학대내용(동일시점 및 동일행위)에 대한 신고가 다른 신고자를 통해 접수

## 2) 시도별 신고접수

시도별 신고접수 건수의 경우, 경기 13,578건(26.1%), 서울 6,137건(11.8%) 순으로 높았으며, 낮은 순으로는 세종 259건(0.5%), 광주 1,038건(2.0%)으로 나타났다.

<표 1-1-2> 시도별 신고접수 건수

(단위 : 건, %)

시도	아동학대의심사례	
서울	6,137	(11.8)
부산	3,035	(5.8)
대구	2,013	(3.9)
인천	3,720	(7.1)
광주	1,038	(2.0)
대전	1,637	(3.1)
울산	3,114	(6.0)
경기	13,578	(26.1)
강원	1,508	(2.9)
충북	1,565	(3.0)
충남	2,793	(5.4)
전북	2,540	(4.9)
전남	2,481	(4.8)
경북	2,702	(5.2)
경남	2,848	(5.5)
제주	1,115	(2.1)
세종	259	(0.5)
총계	52,083	(100.0)

## 2. 신고자 유형

### 1) 신고자 유형

아동학대의심사례로 신고접수된 52,083건에 대한 신고자 유형을 살펴보았다.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23,372건(44.9%)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7,493건(14.4%), 초·중·고교 직원이 6,065건(11.6%),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종사자 5,785건(11.1%)순으로 높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0월부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종사자가 신고의무자로 구분되어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비율이 높아지는 데 영향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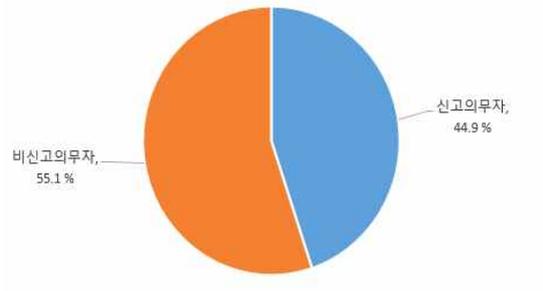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접수 건수는 28,711건(55.1%)이었으며, 부모 10,631건(20.4%), 아동본인 8,966건(17.2%), 이웃·친구 3,660건(7.0%)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3> 신고자 유형

(단위 : 건, %)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초·중·고교 직원	6,065	(11.6)	아동본인	8,966	(17.2)
의료인·의료기사	549	(1.1)	부모	10,631	(20.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702	(1.3)	형제·자매	657	(1.3)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47	(0.1)	친인척	786	(1.5)
보육교직원	241	(0.5)	이웃·친구	3,660	(7.0)
유치원교직원·강사	216	(0.4)	경찰	243	(0.5)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35	(0.1)	종교인	23	(0.0)
소방구급대원	36	(0.1)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239	(0.5)
성매매피해시설상담 종사자	1	(0.0)	의료사회복지사	32	(0.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26	(0.0)	낯선사람	1,138	(2.2)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79	(0.2)	익명	729	(1.4)
사회복지시설종사자	230	(0.4)	법원	103	(0.2)
아동권리보장원·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45	(0.1)	기타	1,504	(2.9)
사회복지전담공무원	7,493	(14.4)			
아동복지전담공무원	1,097	(2.1)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종사자	5,785	(11.1)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54	(0.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53	(0.1)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59	(0.1)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종사자	46	(0.1)			
응급구조사	3	(0.0)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212	(0.4)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종사자	117	(0.2)			
아이돌보미	26	(0.0)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인력	139	(0.3)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10	(0.0)			
입양기관 종사자	6	(0.0)			
소계	23,372	(44.9)	소계	28,711	(55.1)
계			계	52,083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종사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시행일(2020. 10. 1.)부터 신고의무자로 변경됨.



[그림 1-1-2] 신고자 유형

## 2) 시도별 신고자 유형

<표 1-1-4> 시도별 신고의무자 신고자 유형

(단위 : 건)

신고자 유형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총계
신고의무자	초·중·고교 직원	563	421	276	368	104	189	327	1,319	287	329	349	357	293	318	464	80	21	6,065
	의료인·의료기사	110	14	24	41	5	15	9	156	17	19	32	32	15	20	30	7	3	549
	이동복지시설 종사자	63	44	18	35	18	29	13	188	32	25	22	44	49	63	31	15	13	702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8	1	3	4	0	4	2	9	0	1	3	2	4	3	2	0	1	47
	보육교직원	22	39	9	13	0	33	7	38	12	9	17	7	11	11	11	1	1	241
	유치원교직원·강사	26	26	5	13	8	6	4	57	20	2	14	5	3	13	12	2	0	216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8	1	1	0	2	0	0	7	3	1	0	1	3	4	1	2	1	35
	소방구급대원	6	2	4	1	0	1	0	13	0	3	0	0	1	3	1	1	0	36
	성매매피해시설상담 종사자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1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종사자	3	2	0	2	1	5	0	4	0	4	2	1	1	1	0	0	0	26
	가정폭력피해자보호 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2	1	2	4	3	3	7	21	8	0	1	4	5	9	7	2	0	7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2	17	12	6	0	13	3	39	9	10	12	8	16	37	5	10	1	230
	아동권리보장원·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2	2	10	9	0	2	0	2	0	3	0	0	2	11	2	0	0	45
	사회복지전담공무원	783	555	359	812	182	79	871	1,368	98	166	539	321	299	440	493	38	90	7,493
	아동복지전담공무원	135	102	39	27	18	27	62	259	33	20	141	21	22	84	104	3	0	1,097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종사자	108	88	265	438	135	304	320	1,746	329	109	155	714	394	327	52	299	2	5,785
	건강가정지원 센터 종사자	4	4	0	5	10	2	1	12	1	0	0	1	7	3	4	0	0	54
	더문화가족지원 센터 종사자	5	4	2	1	0	1	6	5	2	0	2	3	11	6	3	2	0	53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3	7	6	2	4	0	0	17	4	4	5	0	0	4	2	0	1	59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성폭력피해자통합 지원센터 종사자	2	0	5	4	0	0	2	6	6	0	0	3	2	11	5	0	0	46
	응급구조사	1	0	0	0	0	0	0	1	0	0	0	0	0	1	0	0	0	3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27	12	8	16	7	4	9	66	12	1	1	14	12	14	8	1	0	212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종사자	12	13	3	3	7	2	10	27	2	0	0	15	5	7	10	1	0	117
아이돌보미	2	3	0	2	1	3	0	4	0	0	0	1	5	5	0	0	0	26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인력	6	4	6	13	1	0	3	33	5	5	0	16	23	13	11	0	0	139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0	0	0	0	0	0	0	4	0	1	0	0	2	3	0	0	0	10	
입양기관 종사자	1	3	0	0	0	0	0	2	0	0	0	0	0	0	0	0	0	6	
소 계	1,934	1,365	1,057	1,819	506	722	1,656	5,403	880	712	1,295	1,570	1,185	1,412	1,258	464	134	23,372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종사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시행일(2020. 10. 1.)부터 신고의무자로 변경됨.

<표 1-1-5> 시도별 비신고의무자 신고자 유형

(단위 : 건)

비신고자 유형	시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아동 본인	1,359	517	359	582	115	310	386	2,602	186	264	478	285	439	331	520	182	51	8,966	
부모	1,560	632	351	739	146	305	508	3,149	218	288	601	333	490	463	586	215	47	10,631	
형제·자매	87	42	15	46	8	19	31	184	10	17	54	18	32	27	41	20	6	657	
친인척	92	43	25	60	7	13	34	213	24	36	56	42	31	42	49	16	3	786	
이웃·친구	644	167	106	261	35	162	114	1,184	81	81	160	145	137	140	160	74	9	3,660	
경찰	28	7	6	10	3	4	1	60	20	17	10	13	38	8	1	17	0	243	
종교인	1	0	0	0	0	1	0	11	1	0	1	0	3	4	1	0	0	23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19	1	2	12	5	5	7	80	8	8	20	15	21	29	7	0	0	239	
의료사회복지사	3	4	0	0	0	1	0	17	1	1	2	1	0	1	0	1	0	32	
낯선사람	162	155	36	92	9	25	59	310	11	54	18	35	41	28	65	37	1	1,138	
익명	59	17	7	12	161	23	163	79	9	8	15	32	11	80	35	18	0	729	
법원	6	5	0	9	4	3	4	20	25	0	14	0	2	1	10	0	0	103	
기타	183	80	49	78	39	44	151	266	34	79	69	51	51	136	115	71	8	1,504	
소계	4,203	1,670	956	1,901	532	915	1,458	8,175	628	853	1,498	970	1,296	1,290	1,590	651	125	28,711	

## 제2절 아동학대 사례판단

### 1. 사례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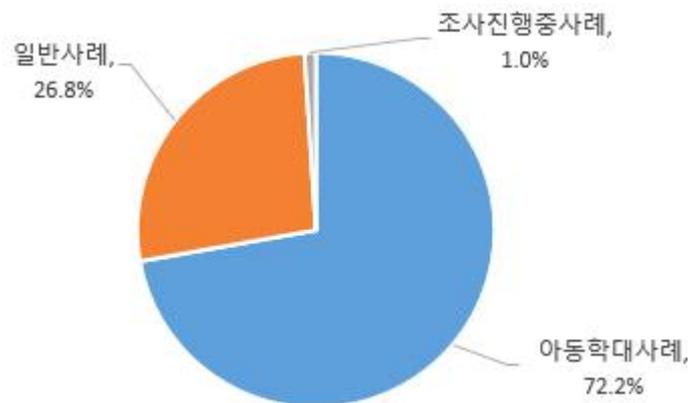
#### 1) 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의심사례 52,083건 중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는 37,605건(72.2%), 일반 사례 13,945건(26.8%), 조사진행중사례는 533건(1.0%)으로 나타났다.

<표 1-2-1> 사례판단 결과

(단위 : 건, %)

아동학대사례	일반사례	조사진행중사례	계
37,605	13,945	533	52,083
(72.2)	(26.8)	(1.0)	(100.0)



[그림 1-2-1] 사례판단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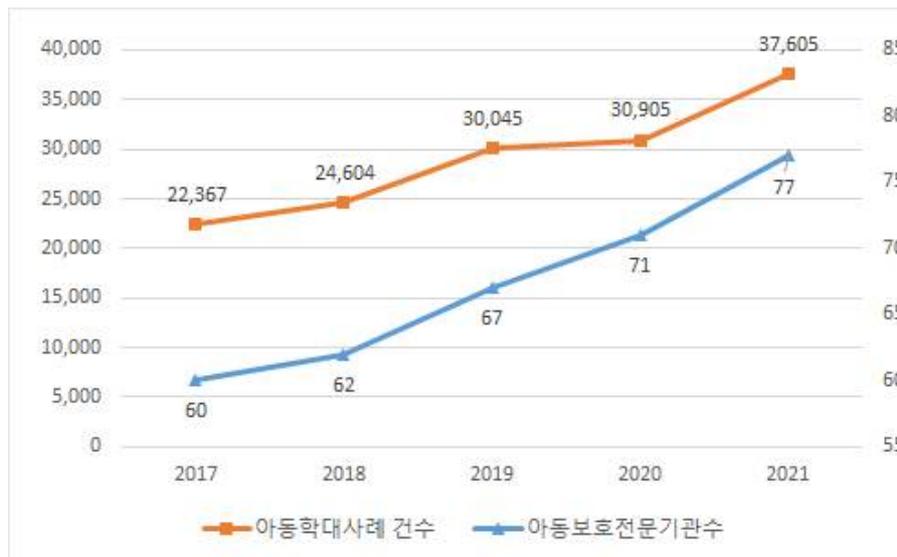
## 2)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5개년)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 아동학대사례는 전년 대비 21.7%로 크게 증가하였다. 기관수는 2017년 60개소에서 2021년 77개소로 17개소 증가했다.

<표 1-2-2>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단위: 건, %, 개소)

구분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아동학대사례	건수	22,367	24,604	30,045
	증가율	19.6	10.0	22.1	2.9	21.7
아동보호전문기관	기관수	60	62	67	71	77
	증가 기관수	1	2	5	4	6



[그림 1-2-2]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 2. 피해아동 발견율

추계 아동 인구(만0세~17세)를 기준으로 피해아동 발견율은 5.02%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울산광역시 14.68%, 전라남도 7.71%, 전라북도 7.62% 순으로 높았다. 낮은 순서로는 세종특별자치시 2.60%, 서울특별시 3.11%이다.

<표 1-2-3> 피해아동 발견율

(단위: 명, 건, %)

지 역	추계아동인구* (만 0~17세)	아동학대사례	피해아동 발견율 (인구 천 명 당)
서울특별시	1,161,581	3,615	3.11
부산광역시	425,971	2,022	4.75
대구광역시	340,233	1,507	4.43
인천광역시	434,440	2,761	6.36
광주광역시	234,969	827	3.52
대전광역시	220,534	1,147	5.20
울산광역시	181,789	2,669	14.68
경기도	2,147,454	10,207	4.75
강원도	205,276	1,160	5.65
충청북도	235,304	825	3.51
충청남도	328,433	2,011	6.12
전라북도	254,332	1,937	7.62
전라남도	251,938	1,942	7.71
경상북도	357,116	2,068	5.79
경상남도	510,030	1,944	3.81
제주특별자치도	115,407	747	6.47
세종특별자치시	82,931	216	2.60
계	7,487,738	37,605	5.02

\* 통계청(2021).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 시도, <http://www.kosis.kr>.

## 제3절 아동학대 사례 분석

### 1. 인구사회학적 요인

#### 1) 피해아동

##### 가. 피해아동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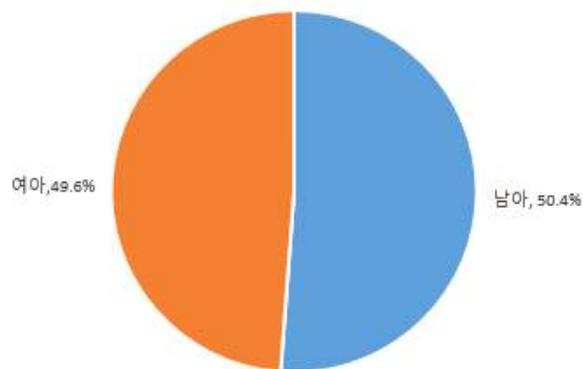
아동학대로 판단된 37,605건 중 남아가 18,952건(50.4%), 여아가 18,653건(49.6%)으로 피해아동은 남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1> 피해아동 성별

(단위 : 건, 명, %)

구분	남아		여아		계	
건수(비율)	18,952	(50.4)	18,653	(49.6)	37,605	(100.0)
명수(비율)	13,940	(50.8)	13,476	(49.2)	27,416	(100.0)

※ 아동학대사례 37,605건에는 동일한 아동이 한 번 이상 신고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가거나, 혹은 동일한 아동이 한 명 이상의 학대행위자에게 학대를 받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해아동 건수와 명수는 일치하지 않음.



[그림 1-3-1] 피해아동 성별

## 나. 피해아동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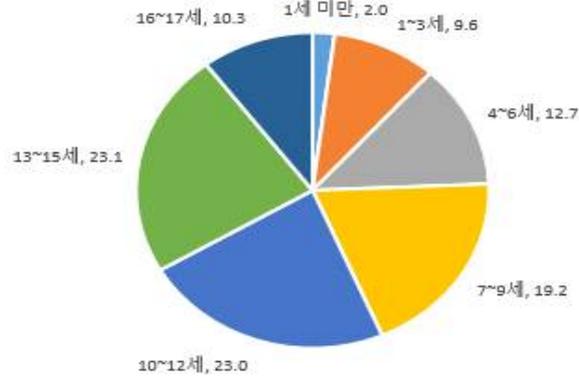
피해아동의 연령의 경우, 만 13~15세가 8,693건(23.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만 10~12세 8,657건(23.0%), 만 7~9세 7,219건(19.2%)순으로 나타났다.

<표 1-3-2> 피해아동 연령

(단위 : 건, 명, %)

연령(만)	건수(비율)		명수(비율)	
1세 미만	757	(2.0)	480	(1.8)
1세	892	(2.4)	544	(2.0)
2세	1,255	(3.3)	769	(2.8)
3세	1,474	(3.9)	956	(3.5)
소계	3,621	(9.6)	2,269	(8.3)
4세	1,505	(4.0)	991	(3.6)
5세	1,516	(4.0)	1,026	(3.7)
6세	1,755	(4.7)	1,232	(4.5)
소계	4,776	(12.7)	3,249	(11.9)
7세	2,080	(5.5)	1,454	(5.3)
8세	2,386	(6.3)	1,688	(6.2)
9세	2,753	(7.3)	2,012	(7.3)
소계	7,219	(19.2)	5,154	(18.8)
10세	2,872	(7.6)	2,142	(7.8)
11세	2,854	(7.6)	2,094	(7.6)
12세	2,931	(7.8)	2,209	(8.1)
소계	8,657	(23.0)	6,445	(23.5)
13세	3,203	(8.5)	2,419	(8.8)
14세	2,937	(7.8)	2,283	(8.3)
15세	2,553	(6.8)	1,955	(7.1)
소계	8,693	(23.1)	6,657	(24.3)
16세	2,164	(5.8)	1,739	(6.3)
17세	1,718	(4.6)	1,423	(5.2)
소계	3,882	(10.3)	3,162	(11.5)
계	37,605	(100.0)	27,416	(100.0)

※ 아동학대사례 37,605건에 동일한 아동이 한번 이상 신고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가거나 혹은 동일한 아동이 한 명 이상의 학대행위자에게 학대를 받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해아동 건수와 명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그림 1-3-2] 피해아동 연령

#### 다. 피해아동 가족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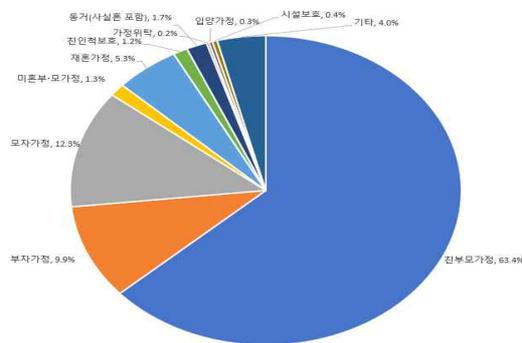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피해아동 가족유형의 경우, 친부모가정 23,838건(63.4%), 모자가정 4,618건(12.3%), 부자가정 3,707건(9.9%), 재혼가정 1,980건(5.3%)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3> 피해아동 가족유형

(단위: 건, %)

친부모 가정	부자 가정	모자 가정	미혼 부·모 가정	재혼 가정	친인척 보호	동거 (사실혼 포함)	가정위탁	입양가정	시설보호	기타	계
23,838	3,707	4,618	506	1,980	443	644	90	117	169	1,493	37,605
(63.4)	(9.9)	(12.3)	(1.3)	(5.3)	(1.2)	(1.7)	(0.2)	(0.3)	(0.4)	(4.0)	(100.0)

- 친부모가정: 적절한 혼인절차에 의한 부모와 부모사이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
- 부자·모자가정: 부모의 이혼 및 사별 등의 사유로 부와 자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
- 미혼부·모가정: 적절한 혼인절차 없이 자녀를 출산하여 부와 자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
- 재혼가정: 이혼 혹은 사별 이후 혼인관계를 통해 재구성된 가족 형태
- 친인척보호가정: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이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족 형태
- 동거(사실혼 포함): 적절한 혼인절차 없이 동일한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가족 형태
- 가정위탁: 가정위탁절차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여 보호하는 형태
- 입양가정: 입양절차를 통해 양부모-양자의 관계를 맺은 가족 형태
- 시설보호: 보호조치를 통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하는 형태



[그림 1-3-3] 피해아동 가족유형

## 2) 학대행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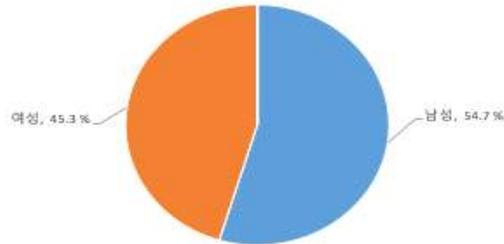
### 가. 학대행위자 성별

아동학대로 판단된 37,605건 중 학대행위자 성별은 남성 20,557건(54.7%), 여성 17,048건(45.3%)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보고되었다.

<표 1-3-4>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 건, 명, %)

구분	남성		여성		계	
건수(비율)	20,557	(54.7)	17,048	(45.3)	37,605	(100.0)
명수(비율)	13,567	(55.9)	10,720	(44.1)	24,287	(100.0)



[그림 1-3-4] 학대행위자 성별

### 나. 학대행위자 연령

학대행위자 연령의 경우, 40대가 17,482건(46.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30대가 10,130건(26.9%), 50대 5,614건(14.9%), 20대 2,725건(7.2%), 60대 986건(2.6%), 70세 이상 341건(0.9%), 19세 이하 118건(0.3%)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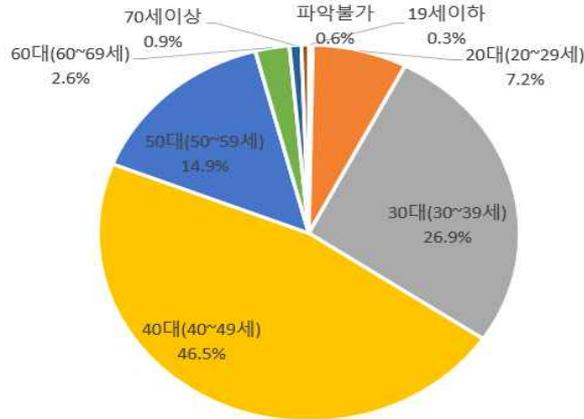
<표 1-3-5> 학대행위자 연령

(단위 : 건, 명, %)

연령(만)	건수(비율)		명수(비율)	
	19세 이하	118	(0.3)	99
20대(20~29세)	2,725	(7.2)	1,733	(7.1)
30대(30~39세)	10,130	(26.9)	5,956	(24.5)
40대(40~49세)	17,482	(46.5)	11,556	(47.6)
50대(50~59세)	5,614	(14.9)	3,895	(16.0)
60대(60~69세)	986	(2.6)	651	(2.7)
70세 이상	341	(0.9)	242	(1.0)

연령(만)	건수(비율)		명수(비율)	
파악불가	209	(0.6)	155	(0.6)
계	37,605	(100.0)	24,287	(100.0)

※ 학대행위자 수감 및 조사거부, 정보부족 등의 경우 학대조사를 통한 정보 취득에 제한사항 발생하여 파악불가 값이 발생할 수 있음.



[그림 1-3-5] 학대행위자 연령

#### 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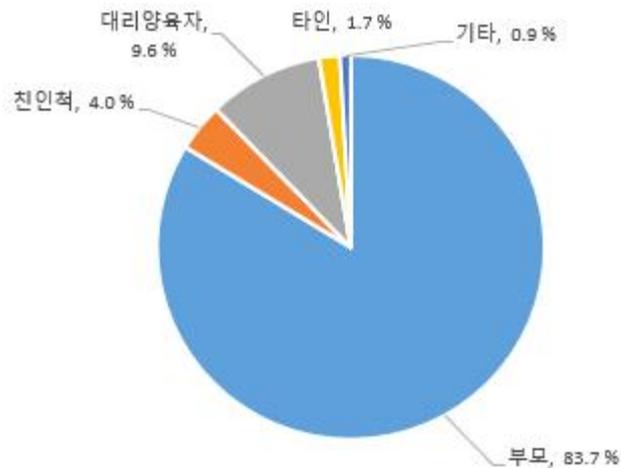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부모에 의한 발생 건수가 31,486건(83.7%)으로 가장 높았고, 대리양육자 3,609건(9.6%), 친인척 1,517건(4.0%)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에 의해 발생한 사례 중, 친부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16,944건(45.1%), 친모는 13,380건(35.6%)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대리양육자 중에서는 보육교직원에 의한 발생이 1,221건(3.2%)으로 가장 높았다.

<표 1-3-6>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

관 계		건수(비율)	
부모	친부	16,944	(45.1)
	친모	13,380	(35.6)
	계부	702	(1.9)
	계모	340	(0.9)
	양부	68	(0.2)
	양모	52	(0.1)
	소계	31,486	(83.7)
친인척	친조부	193	(0.5)
	친조모	383	(1.0)
	외조부	99	(0.3)
	외조모	177	(0.5)
	친인척	435	(1.2)
	형제, 자매	230	(0.6)
	소계	1,517	(4.0)

관 계		건수(비율)	
대리양육자	부,모의 동거인	403	(1.1)
	유치원교직원	140	(0.4)
	초·중·고교 직원	1,089	(2.9)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319	(0.8)
	보육교직원	1,221	(3.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217	(0.6)
	기타시설 종사자	93	(0.2)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58	(0.2)
	위탁부	6	(0.0)
	위탁모	17	(0.0)
	아이돌보미	46	(0.1)
	소계	3,609	(9.6)
	타인	이웃	200
낯선사람		458	(1.2)
소계		658	(1.7)
기타		355	(0.9)
계		37,605	(100.0)



[그림 1-3-6]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대리양육자'란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의 자녀를 하루의 일정시간 동안 대신 양육해주는 사람으로, 이진화·안선희·한유미·강희경(1999)의 연구에서 차용하였음. 이진화·안선희·한유미·강희경 (1999). 부모-대리양육자 관계 척도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7, 381-404.

## 2. 아동학대사례 발생현황

### 1) 아동학대 발생장소

아동학대 발생장소의 경우, 전체 아동학대사례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32,454건 (86.3%)이었고 가정 내에서도 아동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31,675건(84.2%)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와 같이 아동을 돌보고 교육하는 기관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각각 1,233건(3.3%), 129건(0.3%), 1,152건(3.1%)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복지시설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이 237건(0.6%), 기타복지시설이 99건(0.3%)으로 전체 사례 중 0.9%였다.

<표 1-3-7> 아동학대 발생장소

(단위 : 건, %)

발생장소		건수(비율)	
가정 내	아동 가정 내	31,675	(84.2)
	학대행위자 가정 내	779	(2.1)
소계		32,454	(86.3)
집근처 또는 길가		870	(2.3)
친척집		210	(0.6)
이웃집		73	(0.2)
어린이집		1,233	(3.3)
유치원		129	(0.3)
학교		1,152	(3.1)
학원		295	(0.8)
병원		57	(0.2)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237	(0.6)
	기타복지시설	99	(0.3)
소계		4,355	(11.6)
숙박업소		138	(0.4)
종교시설		36	(0.1)
기타		622	(1.7)
계		37,605	(100.0)

### 3. 아동학대사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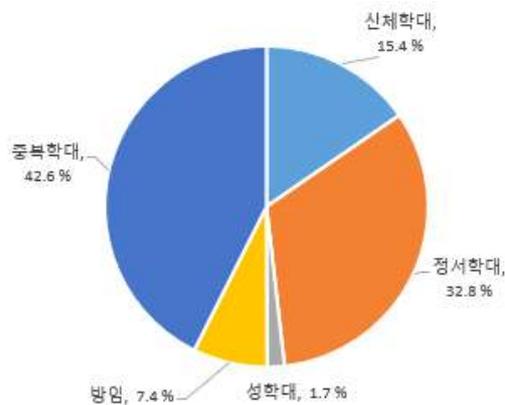
#### 1)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아동학대 사례 유형은 중복학대가 16,026건(42.6%)으로 가장 높았다. 정서학대 12,351건(32.8%), 신체학대 5,780건(15.4%), 방임 2,793건(7.4%), 성학대 655건(1.7%)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학대 중 신체학대·정서학대가 13,538건(36.0%)으로 가장 높았고, 정서학대·방임이 1,011건(2.7%),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이 798건(2.1%), 모든 학대유형이 함께 발생한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은 16건(0.0%)이었다.

<표 1-3-8>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단위 : 건, %)	
유형		건수(비율)	
신체학대		5,780	(15.4)
정서학대		12,351	(32.8)
성학대		655	(1.7)
방임		2,793	(7.4)
중복학대	신체학대·정서학대	13,538	(36.0)
	신체학대·성학대	27	(0.1)
	신체학대·방임	302	(0.8)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	107	(0.3)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	798	(2.1)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	16	(0.0)
	정서학대·성학대	218	(0.6)
	정서학대·방임	1,011	(2.7)
	정서학대·성학대·방임	5	(0.0)
	성학대·방임	4	(0.0)
	소계	16,026	(42.6)
계	37,605	(100.0)	



[그림 1-3-7]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 2) 아동학대사례 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차분석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미분류)에 따른 피해아동 성별, 연령,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 가.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아동학대사례 유형과 피해아동 성별을 보면 신체학대, 방임 사례에서는 남아가 높게 나타났다, 성학대 사례에서는 여아가 85.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표 1-3-9>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단위 : 건, %)

학대유형 성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 임		계	
	남	11,000	(53.5)	13,979	(49.8)	153	(14.8)	2,515	(51.0)	27,647
여	9,568	(46.5)	14,065	(50.2)	879	(85.2)	2,414	(49.0)	26,926	(49.3)
계	20,568	(100.0)	28,044	(100.0)	1,032	(100.0)	4,929	(100.0)	54,573	(100.0)

※중복포함

### 나.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아동학대 유형별 피해아동의 연령을 보면, 1세 미만 아동에게는 방임이 335건(6.8%)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높게 나타났다.

<표 1-3-1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단위 : 건, %)

학대유형 연령(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 임		계	
1세 미만	183	(0.9)	406	(1.4)	1	(0.1)	335	(6.8)	925	(1.7)
1~3세	1,261	(6.1)	2,617	(9.3)	8	(0.8)	923	(18.7)	4,809	(8.8)
4~6세	2,214	(10.8)	3,576	(12.8)	35	(3.4)	913	(18.5)	6,738	(12.3)
7~9세	3,961	(19.3)	5,362	(19.1)	117	(11.3)	1,022	(20.7)	10,462	(19.2)
10~12세	4,976	(24.2)	6,549	(23.4)	279	(27.0)	918	(18.6)	12,722	(23.3)
13~15세	5,491	(26.7)	6,585	(23.5)	383	(37.1)	599	(12.2)	13,058	(23.9)
16~17세	2,482	(12.1)	2,949	(10.5)	209	(20.3)	219	(4.4)	5,859	(10.7)
계	20,568	(100.0)	28,044	(100.0)	1,032	(100.0)	4,929	(100.0)	54,573	(100.0)

※중복포함

#### 다.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의 경우, 성학대를 제외한 학대유형에서 부모에 의한 학대가 가장 높았다. 특히 방임 사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은 부모 87.4%로 나타났지만 성학대의 경우에는 학대행위자가 기타인 경우가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3-11>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건, %)

학대유형 관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 임		계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부 모	17,357	(84.4)	23,875	(85.1)	312	(30.2)	4,310	(87.4)	45,854	(84.0)
친인척	917	(4.5)	1,037	(3.7)	54	(5.2)	134	(2.7)	2,142	(3.9)
대리양육자	1,995	(9.7)	2,618	(9.3)	245	(23.7)	456	(9.3)	5,314	(9.7)
기타	299	(1.5)	514	(1.8)	421	(40.8)	29	(0.6)	1,263	(2.3)
계	20,568	(100.0)	28,044	(100.0)	1,032	(100.0)	4,929	(100.0)	54,573	(100.0)

※ 중복포함

### 4.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상황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의 분리보호 여부 등을 나타내는 피해아동 상황,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피해아동 보호 현황, 학대행위자의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결과를 포함한 학대행위자 상황, 응급조치, 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아동학대처벌법 조치 결과를 살펴보았다.

#### 1) 피해아동 상황

피해아동의 상황은 원가정보호, 분리조치, 사망, 기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가. 피해아동 전체 사례종결 현황

2021년 아동학대사례 37,605건 중 당해에 종결된 사례 수는 11,132건(29.6%)를 차지하였으며, 서비스 지원 등의 개입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는 26,473건(70.4%)이었다.

<표 1-3-12> 피해아동 전체 사례종결 현황

(단위: 건, %)

사례종결		진행중		계	
11,132	(29.6)	26,473	(70.4)	37,605	(100.0)

2021년 아동학대사례사례 37,605건을 바탕으로 보호조치 여부 등 피해아동 상황을 살펴보고, 최초 분리보호 시 분리된 장소 유형과 분리된 이후 피해아동의 가정복귀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하였다.

<표 1-3-13> 피해아동 상황 - 보호조치 유형별

(단위: 건, %)

피해아동 상황		
원가정보호(보호체계 유지)	31,804	(84.6)
분리보호(보호체계 변경)	5,437	(14.5)
사망	44	(0.1)
기타	320	(0.9)
계	37,605	(100.0)

- 원가정보호 : 피해아동을 실제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주양육자에 의해 계속적으로 보호 받고 있는 경우
- 분리보호 : 아동을 실제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주양육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경우, 종래 양육되던 환경을 떠나 다른 누군가(예: 친권자, 친족, 시설 등)에게 보호되는 경우 모두 해당
- 사망 : 아동학대사망, 아동학대 사망 외 일반사망을 포함하고 있음
- 기타 : 소년원 입소, 행방불명(예: 가출 등) 등으로 인해 아동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피해아동의 분리보호 된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한 번이라도 분리된 경험이 있는 사례에서 피해아동이 최초 보호되는 장소유형으로 살펴보니, 시설입소하여 보호하는 경우가 72.8%로 가장 높았고, 친족보호 24.5%, 의료기관 또는 요양소 입원입소 1.3%, 가정위탁 1.3% 순이었다.

<표 1-3-14> 피해아동 상황 - 분리보호 유형별

(단위: 건, %)

분리보호 (보호체계 변경)	친족보호	1,332	(24.5)
	가정위탁	70	(1.3)
	시설입소	3,960	(72.8)
	의료기관 또는 요양소 입원·입소	73	(1.3)
	기타	2	(0.0)
계		5,437	(100.0)

피해아동이 분리보호 된 이후 가정복귀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분리보호 된 아동 사례 5,437건 중 998건(18.4%)은 가정복귀 하였고, 4,439건(81.6%)은 지속해서 분리보호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15> 피해아동 상황 - 분리보호 후 보호 상황

(단위: 건, %)

분리보호 후 가정복귀		998	(18.4)
분리보호 (지속)	친족보호	1,336	(24.6)
	가정위탁	122	(2.2)
	시설입소	2,927	(53.8)
	의료기관 또는 요양소 입원입소	51	(0.9)
	입양	2	(0.0)
	기타	1	(0.0)
	소계	4,439	(81.6)
계		5,437	(100.0)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즉각분리제도(일시보호조치)\*가 '21. 3. 30일부터 시행되어 즉각분리로 분리보호된 피해아동 현황을 살펴보았다.

즉각분리를 통해 분리된 아동은 총 1,250건으로, 세부 보호유형은 시설입소 843건(67.4%), 친족보호 383건(30.6%) 순이다.

<표 1-3-16> 피해아동 상황 - 즉각분리(유형별 포함)

(단위: 건, %)

즉각분리 (일시보호조치)	친족보호	383	(30.6)
	가정위탁	22	(1.8)
	시설입소	843	(67.4)
	기타	2	(0.2)
계		1,250	(100.0)

\*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즉각분리로 보호된 1,250건 중 312건(25.0%)은 가정복귀 하였고, 938건(75.0%)은 지속해서 분리보호 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17> 피해아동 상황 - 즉각분리 후 보호 상황

(단위: 건, %)

분리보호 후 가정복귀		312	(25.0)
분리보호 (지속)	친족보호	322	(25.8)
	가정위탁	21	(1.7)
	시설입소	593	(47.4)
	입양	2	(0.2)
	소계	938	(75.0)
계		1,250	(100.0)

#### 나.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피해아동 보호 현황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호하는 곳으로 피해아동에게 숙식뿐 아니라 생활지원과 상담 및 치료,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 ① 2021년도 피해아동 입·퇴소 현황

2021년 전국 총 98개의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총 1,162명의 아동을 보호하였다. 이 중 2021년 이전에 입소하여 2021년도에도 보호를 받은 아동의 수는 487명(41.9%)이었고, 2021년도에 입소한 아동은 675명(58.1%)이었다.

<표 1-3-18>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현황

(단위: 명, %)

아동 수	2021년 이전 입소아동		2021년 입소아동		총 보호아동	
	487	(41.9)	675	(58.1)	1,162	(100.0)

2021년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한 아동 1,162명 중 퇴소한 아동은 690명(59.4%)이었고, 재원하고 있는 아동은 472명(40.6%)이었다.

<표 1-3-19>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현황

(단위:명, %)

아동 수	퇴소 아동		재원 아동		총 보호아동	
	명수	(%)	명수	(%)	명수	(%)
	690	(59.4)	472	(40.6)	1,162	(100.0)

② 2021년도 퇴소 아동의 거주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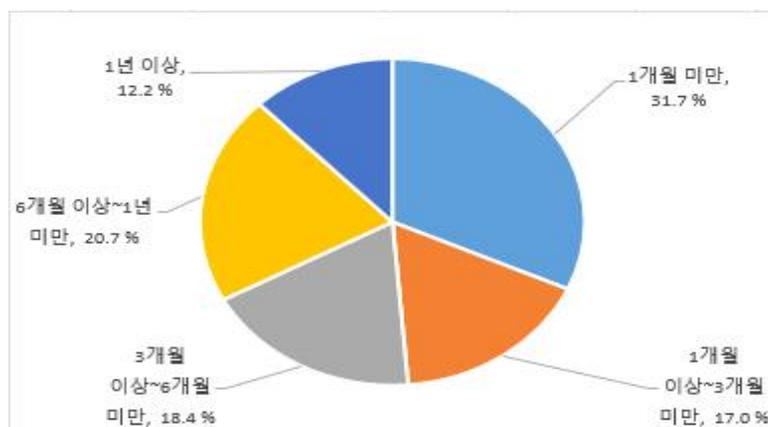
2021년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퇴소한 아동 총 690명 기준 퇴소 아동들의 거주 기간을 살펴보면, 1개월 미만 거주한 아동이 219명(31.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개월 이상~1년 미만 143명(20.7%),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127명(18.4%), 1개월 이상~3개월 미만이 117명(17.0%), 1년 이상 84명(12.2%) 순으로 보고되었다.

<표 1-3-20>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의 거주 기간

(단위:명, %)

거주 기간	명수(비율)	
1개월 미만	219	(31.7)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117	(17.0)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127	(18.4)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43	(20.7)
1년 이상	84	(12.2)
계	690	(100.0)

※ 퇴소 아동 690명 기준



[그림 1-3-8]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의 거주 기간

③ 2021년도 퇴소 아동의 거주지

2021년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퇴소한 아동의 거주지는 원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이 219명(31.7%)으로 가장 많았다, 타 시설로 입소한 아동 143명(20.7%), 가정위탁 127명(18.4%), 친족(친인척)보호된 아동은 117명(17.0%)으로 나타났다.

<표 1-3-21>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 거주지

(단위: 명, %)

퇴소 후 거주지	명수(비율)	
원가정 복귀	219	(31.7)
친족(친인척)보호	117	(17.0)
가정위탁	127	(18.4)
타 시설 입소	143	(20.7)
기타	84	(12.2)
계	690	(100.0)

※ 퇴소 아동 690명 기준

2) 학대행위자 상황

2021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37,605건을 바탕으로 학대행위자 상황 중 고소·고발 등 사건 처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고소·고발뿐 아니라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법적조치를 진행한 경우 해당하는 것으로 총 16,096건이었다.

<표 1-3-22> 학대행위자 상황

(단위: 건)

아동학대사례 건수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37,605	16,096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상황 중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결과의 경우 정서학대 11,565건(46.6%), 신체학대 10,105건(40.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3-23>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상황

(단위 : 건, %)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고소·고발사건처리	10,105	(40.7)	11,565	(46.6)	867	(3.5)	2,288	(9.2)	24,825	(100.0)

※중복포함

### 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조치 현황\*

본 절에서는 2021년 아동학대사례 중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한 조치 현황을 집계하였다. 전체 아동학대사례 37,605건 중 5,718건(15.2%)이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조치되었다.

<표 1-3-24> 아동학대처벌법 조치사례 비율

(단위: 건, %)

아동학대사례	아동학대처벌법 조치사례	아동학대처벌법 조치사례 비율
37,605	5,718	15.2

#### ① 피해아동 응급조치 현황

피해아동 응급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한 건수가 2,673건(79.3%)로 가장 많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각각 348건(10.3%)으로 총 3,369건이다. 전체 응급조치 내용 중 가장 많이 조치한 내용은 3호(피해아동 보호시설 인도) 2,051건(41.6%)이었고, 다음으로 1호(아동학대범죄 행위 제지) 1,410건(28.6%), 2호(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1,277건(25.9%), 4호(피해아동 의료기관 인도) 197건(4.0%)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25> 피해아동 응급조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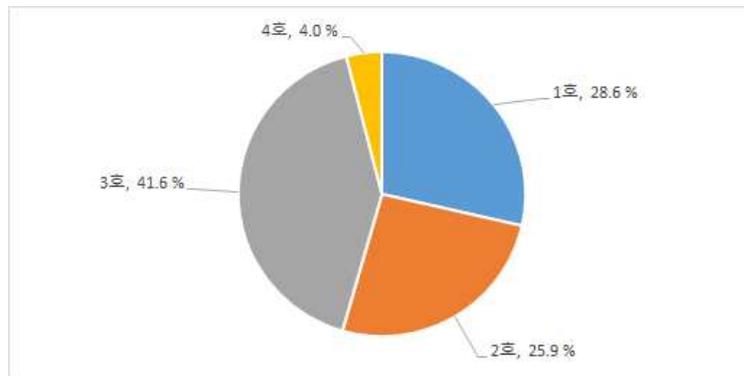
(단위 : 건, %)

분류	건수		조치 내용					계 (중복집계)				
			1호	2호	3호	4호	계					
상담원	348	(10.3)	39	(9.1)	64	(14.9)	317	(73.5)	11	(2.5)	431	(100.0)

\*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조치 현황의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입력 후 수정·보완된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경찰청 통계와는 다를 수 있음

분류	건수		조치 내용									
			1호		2호		3호		4호		계 (중복집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348	(10.3)	29	(6.9)	64	(15.2)	313	(74.5)	14	(3.3)	420	(100.0)
경찰	2,673	(79.3)	1,342	(32.9)	1,149	(28.1)	1,421	(34.8)	172	(4.2)	4,084	(100.0)
계	3,369	(100.0)	1,410	(28.6)	1,277	(25.9)	2,051	(41.6)	197	(4.0)	4,935	(100.0)

- 1호: 아동학대범죄 행위 제지
- 2호: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 3호: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 4호: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그림 1-3-9] 피해아동 응급조치 세부 내용

## ② 임시조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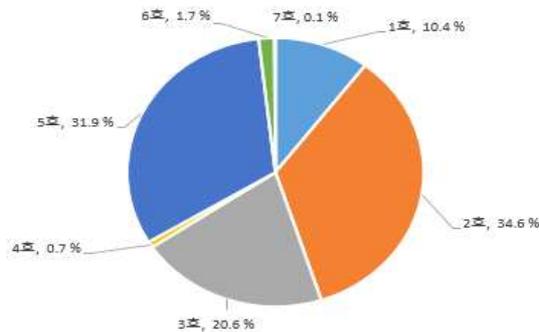
임시조치 최종결정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해아동·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시군구청장·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임시조치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검사에게 임시조치 청구를 요청한 경우,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한 경우 등을 통해 임시조치가 인용된 사례는 총 3,561건(97.0%)에 해당하고, 청구가 기각된 사례는 112건(3.0%)이었다. 임시조치 인용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임시조치 2호(100m 이내 접근 금지)조치가 2,428건(34.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임시조치 5호(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의 상담 및 교육 위탁)가 2,233건(31.9%)으로 그다음으로 높았다. 임시조치 2호(100m 이내 접근 금지)조치는 주거, 학교 및 학원, 보호시설, 병원 그 외 기타 장소로 중복집계가 가능하다. 이 중 학교 및 학원에서의 접근 금지가 1,478건(34.3%), 보호시설로의 접근 금지가 1,285건(29.8%), 주거로의 접근 금지가 1,277건(29.6%) 순으로 높았다.

<표 1-3-26> 임시조치 결정 현황

(단위 : 건, %)

신청인	인용 건수	기각 건수	총 건수	인용 세부 내용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결정 계 (중복 집계)	
					주거	학교 학원	보호 시설	병원	기타	소계 (중복집계)							소계 (중복제외)
검사	127 (97.7)	3 (2.3)	130 (100.0)	38 (13.9)	66 (39.1)	70 (41.4)	31 (18.3)	1 (0.6)	1 (0.6)	169 (100.0)	97 (35.4)	61 (22.3)	1 (0.4)	77 (28.1)	0 (0.0)	0 (0.0)	274 (100.0)
사법 경찰관	2,454 (97.1)	72 (2.9)	2,526 (100.0)	555 (10.9)	969 (28.7)	1,153 (34.1)	1,048 (31.0)	86 (2.5)	123 (3.6)	3,379 (100.0)	1,900 (37.4)	1,134 (22.3)	41 (0.8)	1,386 (27.3)	54 (1.1)	4 (0.1)	5,074 (100.0)
시·군·구 청장	244 (94.9)	13 (5.1)	257 (100.0)	35 (8.3)	60 (31.9)	71 (37.8)	42 (22.3)	5 (2.7)	10 (5.3)	188 (100.0)	100 (23.6)	55 (13.0)	2 (0.5)	193 (45.6)	38 (9.0)	0 (0.0)	423 (100.0)
아동보호 전문기관장	258 (92.1)	22 (7.9)	280 (100.0)	11 (2.9)	26 (27.4)	27 (28.4)	39 (41.1)	1 (1.1)	2 (2.1)	95 (100.0)	68 (17.8)	43 (11.2)	3 (0.8)	237 (61.9)	21 (5.5)	0 (0.0)	383 (100.0)
피해아동 의 법정 대리인	16 (88.9)	2 (11.1)	18 (100.0)	3 (9.1)	9 (27.3)	14 (42.4)	6 (18.2)	0 (0.0)	4 (12.1)	33 (100.0)	15 (45.5)	9 (27.3)	1 (3.0)	5 (15.2)	0 (0.0)	0 (0.0)	33 (100.0)
피해 아동	12 (100.0)	0 (0.0)	12 (100.0)	3 (13.6)	8 (34.8)	10 (43.5)	4 (17.4)	0 (0.0)	1 (4.3)	23 (100.0)	10 (45.5)	4 (18.2)	0 (0.0)	5 (22.7)	0 (0.0)	0 (0.0)	22 (100.0)
판사 직권	450 (100.0)	0 (0.0)	450 (100.0)	84 (10.5)	139 (32.6)	133 (31.2)	115 (27.0)	5 (1.2)	34 (8.0)	426 (100.0)	238 (29.8)	138 (17.3)	3 (0.4)	330 (41.3)	7 (0.9)	0 (0.0)	800 (100.0)
계	3,561 (97.0)	112 (3.0)	3,673 (100.0)	729 (10.4)	1,277 (29.6)	1,478 (34.3)	1,285 (29.8)	98 (2.3)	175 (4.1)	4,313 (100.0)	2,428 (34.6)	1,444 (20.6)	51 (0.7)	2,233 (31.9)	120 (1.7)	4 (0.1)	7,009 (100.0)

- 1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2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 3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4호: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5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 6호: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서의 위탁
- 7호: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그림 1-3-10] 임시조치 결정 세부 내용

③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현황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인용된 총 236건 중 임시보호명령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건수는 134건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인용 건수에 대해 살펴보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130건을 청구하여 128건이 인용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청구하여 인용된 건수는 총 74건으로 청구건수의 83.1%가 인용되었다. 변호사는 8건을 청구하여 100% 인용되었다. 판사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인용된 건수는 1건으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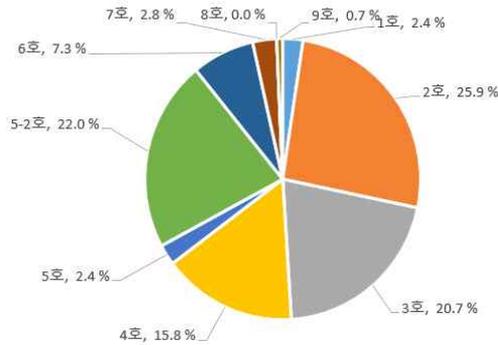
피해아동보호명령 인용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2호(학대행위자의 접근제한 조치)가 120건(25.9%)으로 가장 높았고, 5-2호(피해아동 상담·치료위탁) 102건(22.0%), 3호(전기통신 접근제한) 96건(20.7%), 4호(피해아동 보호위탁) 73건(15.8%)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27>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현황

(단위: 건, %)

청구인	인용 건수	기각 건수	총 건수	임 시 보 호 결 정	임 시 보 호 기 각	인용 세부 내용										계 (중복 집계)
						1호	2호	3호	4호	5호	5-2 호	6호	7호	8호	9호	
판사 직권	1 (100.0)	0 (0.0)	1 (10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시·도지사, 시·군·구 청장	128 (98.5)	2 (1.5)	130 (100.0)	72 (55.4)	58 (44.6)	5 (1.9)	61 (23.4)	49 (18.8)	32 (12.3)	7 (2.7)	74 (28.4)	23 (8.8)	9 (3.4)	0 (0.0)	1 (0.4)	261 (100.0)
아동보호 전문기관장	74 (83.1)	15 (16.9)	89 (100.0)	47 (52.8)	42 (47.2)	1 (0.8)	35 (27.1)	31 (24.0)	35 (27.1)	3 (2.3)	16 (12.4)	7 (5.4)	1 (0.8)	0 (0.0)	0 (0.0)	129 (100.0)
변호사	8 (100.0)	0 (0.0)	8 (100.0)	4 (50.0)	4 (50.0)	0 (0.0)	7 (36.8)	5 (26.3)	2 (10.5)	1 (5.3)	1 (5.3)	1 (5.3)	1 (5.3)	0 (0.0)	1 (5.3)	19 (100.0)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6 (85.7)	1 (14.3)	7 (100.0)	3 (42.9)	4 (57.1)	0 (0.0)	5 (29.4)	5 (29.4)	3 (17.6)	0 (0.0)	2 (11.8)	0 (0.0)	1 (5.9)	0 (0.0)	1 (5.9)	17 (100.0)
파악불가	19 (95.0)	1 (5.0)	20 (100.0)	8 (40.0)	12 (60.0)	5 (13.9)	12 (33.3)	6 (16.7)	0 (0.0)	0 (0.0)	9 (25.0)	3 (100.0)	1 (33.3)	0 (0.0)	0 (0.0)	36 (100.0)
계	236 (92.6)	19 (7.5)	255 (100.0)	134 (52.5)	121 (47.5)	11 (2.4)	120 (25.9)	96 (20.7)	73 (15.8)	11 (2.4)	102 (22.0)	34 (7.3)	13 (2.8)	0 (0.0)	3 (0.7)	463 (100.0)

- 1호: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3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4호: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 5호: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 5-2호: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
  - 6호: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 7호: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8호: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 9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 ※ 파악불가의 경우 청구인, 청구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임



[그림 1-3-11]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세부 내용

## 나.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결과

### ①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결과\*

2021년 전체 아동학대사례인 37,605건 중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고소·고발 등의 사건처리 조치를 취한 것은 16,096건(42.8%)이었다. 고소·고발이 진행된 경우는 13,761건(85.5%)이었고 고소·고발은 진행되지 않았으나,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처분이 행해진 경우는 2,335건(14.5%)이었다.

<표 1-3-28>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결과(1)

(단위: 건,%)

고소·고발 등 수사진행						수사미진행 ·처벌법조치완료		계							
고소		고발		수사의뢰		인지수사		파악불가		소계					
2,235	(13.9)	276	(1.7)	967	(6.0)	9,938	(61.7)	345	(2.1)	13,761	(85.5)	2,335	(14.5)	16,096	(100.0)

- ※ 인지수사: 고소·고발 건 없이 사법경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식될 때 수사를 개시·진행하는 경우와 처벌법 응급조치 등에 따른 수사개시가 이루어지는 경우 모두를 포함.
- ※ 수사미진행·처벌법조치완료: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으나,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처분이 행해진 사례
- ※ 학대행위자 수감 및 조사거부, 정보부족 등의 경우 학대조사를 통한 정보 취득에 제한사항 발생하여 파악불가 값이 생길 수 있음.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된 사례에 대하여 경찰수사, 검찰수사, 재판진행 중 및 판결 항목으로 구분하여 결과 값을 제시하였다. 본 자료에서 경찰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검찰수사와 법원으로 송치된 사례는 경찰수사의 고소·고발 통계 자료로 집계하지 않았으며, 검찰수사를 거쳐 법원으로 기소된 사례는 검찰수사 통계수치에 포함하지 않았다.

\* 고소·고발 조치의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입력 후 수정·보완된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경찰수사만 이루어진 사례는 6,344건(39.4%)이었다. 그 중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 중인 사례는 5,152건(32.0%), 내사종결된 사례는 343건(2.1%)이었다. 검찰수사가 이루어진 사례 3,223건(20.0%) 중 수사 진행 중인 사례는 1,146건(7.1%), 불기소된 사례는 908건(5.6%),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사례는 944건(5.9%),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례는 51건(0.3%), 형사기소는 80건(0.5%)이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례 883건(5.5%) 중 1심이 진행 중인 사례는 696건(4.3%), 항소심(2심)이 진행 중인 사례는 40건(0.2%), 상고심(최종)이 진행 중인 사례는 9건(0.1%)이었다.

법원 판결을 받은 사례는 총 2,962건(18.4%)이었다. 이중 보호처분 사례는 1,874건(11.6%), 형사처벌 사례가 316건(2.0%) 등으로 집계되었다.

<표 1-3-29>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결과(2)

(단위 : 건, %)

구 분		건수(비율)		
경찰수사	수사중	5,152	(32.0)	
	내사종결	343	(2.1)	
	각하	67	(0.4)	
	파악불가	782	(4.9)	
	경찰수사 계	6,344	(39.4)	
검찰수사	수사중	1,146	(7.1)	
	불기소	908	(5.6)	
	아동보호사건송치	944	(5.9)	
	가정보호사건송치	51	(0.3)	
	형사기소	80	(0.5)	
	파악불가	94	(0.6)	
	검찰수사 계	3,223	(20.0)	
재판진행중	1심 진행	696	(4.3)	
	항소심 진행	40	(0.2)	
	상고심 진행	9	(0.1)	
	파악불가	138	(0.9)	
재판진행중 계		883	(5.5)	
판결	보호처분	감호위탁	1	(0.0)
		보호관찰	156	(1.0)
		보호관찰, 상담위탁	144	(0.9)
		보호관찰, 치료위탁	11	(0.1)
		보호관찰, 치료위탁, 상담위탁	2	(0.0)
		사회봉사·수강명령	255	(1.6)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74	(0.5)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상담위탁	13	(0.1)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치료위탁	1	(0.0)
		사회봉사·수강명령, 상담위탁	20	(0.1)
		상담위탁	1,034	(6.4)
		접근행위제한	7	(0.0)
		접근행위제한, 보호관찰	4	(0.0)

구 분		건수(비율)		
	접근행위제한, 보호관찰, 상담위탁	6	(0.0)	
	접근행위제한, 보호관찰, 치료위탁, 상담위탁	1	(0.0)	
	접근행위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1	(0.0)	
	접근행위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상담위탁,	2	(0.0)	
	접근행위제한, 상담위탁,	7	(0.0)	
	접근행위제한, 전기통신이용 접근행위제한,	26	(0.2)	
	접근행위제한, 전기통신이용 접근행위제한, 보호관찰,	4	(0.0)	
	접근행위제한, 전기통신이용접근행위제한, 보호관찰, 치료위탁	1	(0.0)	
	접근행위제한, 전기통신이용접근행위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3	(0.0)	
	접근행위제한, 전기통신이용접근행위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3	(0.0)	
	접근행위제한, 전기통신이용접근행위제한, 상담위탁,	4	(0.0)	
	접근행위제한, 전기통신이용접근행위제한, 치료위탁, 상담위탁	1	(0.0)	
	접근행위제한, 전기통신이용접근행위제한, 친권행사제한	1	(0.0)	
	접근행위제한, 치료위탁	1	(0.0)	
	접근행위제한, 친권행사제한	1	(0.0)	
	치료위탁	18	(0.1)	
	치료위탁, 상담위탁	6	(0.0)	
	친권행사제한	1	(0.0)	
	친권행사제한, 보호관찰	1	(0.0)	
	파악불가	64	(0.4)	
	보호처분 계	1,874	(11.6)	
	형사처벌	집행유예	1	(0.0)
		과료	1	(0.0)
		벌금	57	(0.4)
		벌금,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5	(0.0)
		벌금,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12	(0.1)
벌금, 취업제한		1	(0.0)	
선고유예		1	(0.0)	
징역		23	(0.1)	
징역, 몰수, 집행유예, 수강명령		1	(0.0)	
징역, 몰수, 집행유예, 수강명령, 사회봉사		1	(0.0)	
징역, 몰수, 취업제한		1	(0.0)	
징역, 벌금, 집행유예,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1	(0.0)	
징역,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8	(0.0)	
징역,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82	(0.5)	
징역, 집행유예		29	(0.2)	
징역, 집행유예, 보호관찰, 취업제한		1	(0.0)	
징역, 집행유예, 사회봉사		1	(0.0)	
징역, 집행유예, 사회봉사, 취업제한		5	(0.0)	
징역, 집행유예, 수강명령	7	(0.0)		
징역, 집행유예, 수강명령, 보호관찰	1	(0.0)		

구 분		건수(비율)	
	징역,집행유예,수강명령,보호관찰,취업제한	2	(0.0)
	징역,집행유예,수강명령,사회봉사	2	(0.0)
	징역,집행유예,수강명령,사회봉사,보호관찰	1	(0.0)
	징역,집행유예,수강명령,사회봉사,취업제한	27	(0.2)
	징역,집행유예,수강명령,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보호관찰,취업제한	1	(0.0)
	징역,집행유예,수강명령,취업제한	8	(0.0)
	징역,집행유예,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1	(0.0)
	징역,집행유예,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취업제한	1	(0.0)
	징역,집행유예,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취업제한	2	(0.0)
	징역,집행유예,취업제한	15	(0.1)
	징역,취업제한	9	(0.1)
	취업제한	8	(0.0)
	형사처벌 계	316	(2.0)
	공소기각	9	(0.1)
무죄	17	(0.1)	
불처분	671	(4.2)	
파악불가	75	(0.5)	
판결 계	2,962	(18.4)	
파악불가	수사진행했으나 결과값 없음	349	(2.2)
	수사미진행·처벌법조치 완료	2,335	(14.5)
	계	2,684	(16.7)
합계	16,096	(100.0)	

※ 학대행위자 수감 및 조사거부, 정보부족 등의 경우 학대조사를 통한 정보 취득에 제한사항이 발생하여 파악불가 값이 생길 수 있음.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중 판결이 완료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보호처분이 1,874건 (11.6%)으로 다른 판결 결과보다 비중이 높았다.

아동학대유형별 고소·고발 판결 결과를 살펴보면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중복학대에 대한 보호처분이 각 329건(12.4%), 353건(9.7%), 115건(10.0%), 1,066건(13.1%)으로 다른 판결 결과보다 비중이 높았으며, 성학대의 경우, 형사처벌(24건, 4.4%)이 보호처분 (11건, 2.0%)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표 1-3-3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결과

(단위 : 건, %)

유형	고소·고발 결과			판결					파악불가		계	
	경찰수사	검찰수사	재판 진행중	보호처분	형사처벌	무죄 +공소기각 +불처분	파악불가	소 계	수사진행했으나 결과값 없음	수사미진행·처벌법조치 완료		
신체학대	938 (35.5)	611 (23.1)	133 (5.0)	329 (12.4)	38 (1.4)	149 (5.6)	12 (0.5)	528 (20.0)	71 (2.7)	363 (13.7)	2,644 (100.0)	
정서학대	1,533 (252.0)	723 (20.0)	169 (4.7)	353 (9.7)	81 (2.2)	167 (4.6)	11 (0.3)	612 (16.9)	87 (2.4)	500 (13.8)	3,624 (100.0)	
성학대	212 (39.0)	158 (29.0)	81 (14.9)	11 (2.0)	24 (4.4)	3 (0.6)	12 (2.2)	50 (9.2)	16 (2.9)	27 (5.0)	544 (100.0)	
방임	516 (44.7)	226 (19.6)	53 (4.6)	115 (10.0)	14 (1.2)	31 (2.7)	3 (0.3)	163 (14.1)	16 (1.4)	181 (15.7)	1,155 (100.0)	
중복학대	신체·정서	2,554 (38.1)	1,258 (18.8)	346 (5.2)	940 (14.0)	106 (1.6)	316 (4.7)	32 (0.5)	1,394 (20.8)	135 (2.0)	1,010 (15.1)	6,697 (100.0)
	신체·성	5 (21.7)	6 (26.1)	4 (17.4)	0 (0.0)	4 (17.4)	0 (0.0)	0 (0.0)	4 (17.4)	0 (0.0)	4 (17.4)	23 (100.0)
	신체·방임	48 (29.8)	39 (24.2)	12 (7.5)	20 (12.4)	5 (3.1)	2 (1.2)	0 (0.0)	27 (16.8)	2 (1.2)	33 (20.5)	161 (100.0)
	신체·정서·성	40 (43.0)	18 (19.4)	6 (6.5)	3 (3.2)	6 (6.5)	1 (1.1)	2 (2.2)	12 (12.9)	2 (2.2)	15 (16.1)	93 (100.0)
	신체·정서·방임	166 (35.2)	65 (13.8)	36 (7.6)	56 (11.9)	20 (4.2)	19 (4.0)	2 (0.4)	97 (20.6)	10 (2.1)	97 (20.6)	471 (100.0)
	신체·정서·성·방임	7 (43.8)	0 (0.0)	2 (12.5)	0 (0.0)	3 (18.8)	0 (0.0)	0 (0.0)	3 (18.8)	0 (0.0)	4 (25.0)	16 (100.0)
	정서·성	88 (48.1)	46 (25.1)	20 (10.9)	4 (2.2)	7 (3.8)	1 (0.5)	0 (0.0)	12 (6.6)	3 (1.6)	14 (7.7)	183 (100.0)
	정서·방임	234 (49.1)	72 (15.1)	20 (4.2)	43 (9.0)	8 (1.7)	8 (1.7)	1 (0.2)	60 (12.6)	7 (1.5)	84 (17.6)	477 (100.0)
	정서·성·방임	1 (25.0)	1 (25.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50.0)	4 (100.0)
	성·방임	2 (50.0)	0 (0.0)	1 (25.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25.0)	4 (100.0)
	소계	3,145 (38.7)	1,505 (18.5)	447 (5.5)	1,066 (13.1)	159 (2.0)	347 (4.3)	37 (0.5)	1,609 (19.8)	159 (2.0)	1,264 (15.5)	8,129 (100.0)
계	6,344 (39.4)	3,223 (20.0)	883 (5.5)	1,874 (11.6)	316 (2.0)	697 (4.3)	75 (0.5)	2,962 (18.4)	349 (2.2)	2,335 (14.5)	16,096 (100.0)	

※ 학대행위자 수감 및 조사거부, 정보부족 등의 경우 학대조사를 통한 정보 취득에 제한사항이 발생하여 파악불가 값이 생길 수 있음.

## 5. 서비스 제공 현황

피해아동이 학대 후유증을 극복, 학대행위자의 재학대를 방지, 피해아동 가족의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그리고 피해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에는 상담서비스, 입원치료·통원치료를 포함하는 의료서비스, 심리검사·미술치료·놀이치료 등을 포함하는 심리치료 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기관 연결·공적지원 연결을 포함하는 가족기능강화서비스, 일시보호시설 및 쉼터 입·퇴소 절차 지원, 분리보호 및 절차 지원, 출결 및 비밀전학 처리 지원 등을 포함하는 학습 및 보호 지원서비스, 법률자문과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절차 진행과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또는 고소·고발 등 사건 처리에 대한 서비스가 있다. 또한 임시조치 또는 조건부기소유예, 보호처분 결정,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를 통해 검찰·법원으로부터 상담·교육 위탁 처분을 받은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자수탁프로그램과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한 상담 및 교육인 피해아동수탁프로그램을 포함한다.

<표 1-3-31>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

(단위 : 회)

구분	2021년 전체 서비스
피해아동	791,587
학대행위자	437,644
부모 또는 가족	183,756
계	1,412,987

※ 서비스는 상담서비스, 의료서비스, 심리치료 서비스, 가족기능강화서비스, 학습 및 보호 지원서비스, 사건 처리, 행위자수탁프로그램 및 피해아동 수탁프로그램, 기타 등을 포함.

2021년 한 해 동안 피해아동에게 제공한 서비스 횟수는 총 791,587회이다. 구체적으로는 상담서비스가 534,413회(67.5%)로 가장 높았고, 가족기능강화서비스 71,350회(9.0%), 심리치료지원서비스 63,966회(8.1%)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총 437,644회로 집계되었으며, 상담서비스 322,281회(73.6%), 심리치료지원서비스 30,108회(6.9%), 사건처리지원 29,857회(6.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피해아동의 비가해 부모 또는 가족 대상 서비스는 총 183,756회였으며, 상담서비스 141,365회(76.9%), 가족기능강화서비스 20,108회(10.9%), 심리치료지원서비스 10,533회(5.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3-32>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중복포함)

(단위 : 회, %)

구분	아동		행위자		부모 및 가족	
	회	(%)	회	(%)	회	(%)
상담	534,413	(67.5)	322,281	(73.6)	141,365	(76.9)
의료지원	5,080	(0.6)	1,283	(0.3)	388	(0.2)
심리치료지원	63,966	(8.1)	30,108	(6.9)	10,533	(5.7)
가족기능강화	71,350	(9.0)	19,764	(4.5)	20,108	(10.9)
학습 및 보호지원	21,374	(2.7)	2,011	(0.5)	723	(0.4)
사건처리지원	54,433	(6.9)	29,857	(6.8)	2,472	(1.3)
행위자수탁프로그램	590	(0.1)	26,574	(6.1)	332	(0.2)
피해아동수탁프로그램	1,665	(0.2)	512	(0.1)	67	(0.0)
기타	38,716	(4.9)	5,254	(1.2)	7,768	(4.2)
계	791,587	(100.0)	437,644	(100.0)	183,756	(100.0)

아동학대 가정 재학대 예방 지원 사업 ‘홈케어플래너 서포터즈’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을 방문하여 심리검사, 심리치료, 상담, 일상생활 지원, 건강·정신지원, 전문서비스 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1-3-33> 홈케어플래너 서포터즈 서비스 제공 실적

(단위 : 회)

구분		2021년 홈케어 서비스
참여대상 인원(명)	피해아동	2,213
	학대행위자	1,350
	가족구성원	541
	소계	4,104
서비스제공횟수(회)	피해아동	22,543
	학대행위자	13,686
	가족구성원	4,966
	소계	41,195

※ ‘홈케어플래너 서포터즈’는 아동학대 가정 재학대 예방지원 사업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을 방문하여 심리검사, 심리치료, 상담, 일상생활 지원, 건강·정신지원, 전문서비스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 제공

## 6. 재학대 사례

### 1) 재학대 사례 현황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2021년에 신고접수 되어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재학대 사례는 총 5,517건\*이며, 재학대 아동 명수는 4,176명이다. 2021년 전체 아동학대사례 37,605건 대비 재학대 사례 비율은 14.7%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표 1-3-34> 재학대 사례 발생 건수(3개년)

(단위: 건, 명, %)

연도	재학대 사례 건수	재학대 아동수	아동학대사례 중 재학대 사례 비율
2019	3,431	2,776	11.4
2020	3,671	2,876	11.9
2021	5,517	4,176	14.7

### 2)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 가.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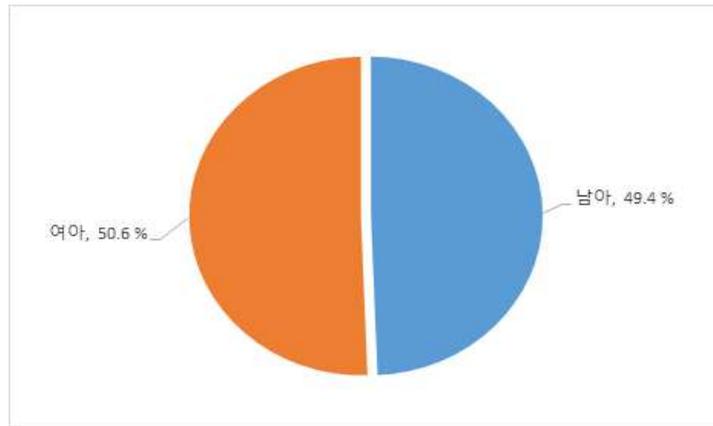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성별의 경우, 남아 2,726건(49.4%), 여아 2,791건(50.6%)이었다.

<표 1-3-35>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단위: 건, 명, %)

성별	건수(비율)		명수(비율)	
	남아	2,726	(49.4)	2,076
여아	2,791	(50.6)	2,100	(50.3)
계	5,517	(100.0)	4,176	(100.0)

\* 2021년의 재학대 사례란, 2017년 이후로 신고접수 된 사례 중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가 2021년에 다시 신고 접수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를 말함.



[그림 1-3-12]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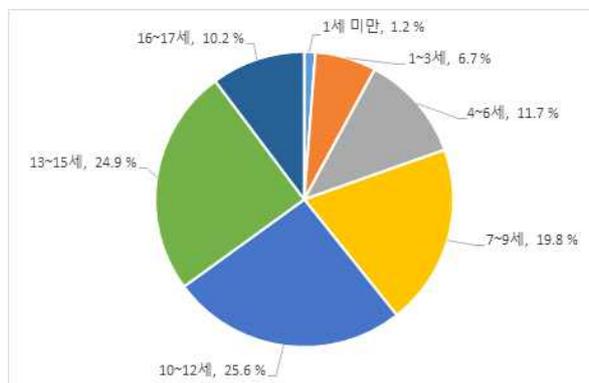
### 나.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연령의 경우, 만 10세~12세가 1,413건(25.6%), 만 13세~15세 1,372건(24.9%), 만 7세~9세 1,091건(19.8%)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표 1-3-36>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단위: 건, 명, %)

연 령(만)	건수(비율)		명수(비율)	
	건수	비율 (%)	명수	비율 (%)
1세 미만	66	(1.2)	42	(1.0)
1~3세	367	(6.7)	254	(6.1)
4~6세	646	(11.7)	469	(11.2)
7~9세	1,091	(19.8)	793	(19.0)
10~12세	1,413	(25.6)	1,083	(25.9)
13~15세	1,372	(24.9)	1,069	(25.6)
16~17세	562	(10.2)	466	(11.2)
계	5,517	(100.0)	4,176	(100.0)



[그림 1-3-13]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 3)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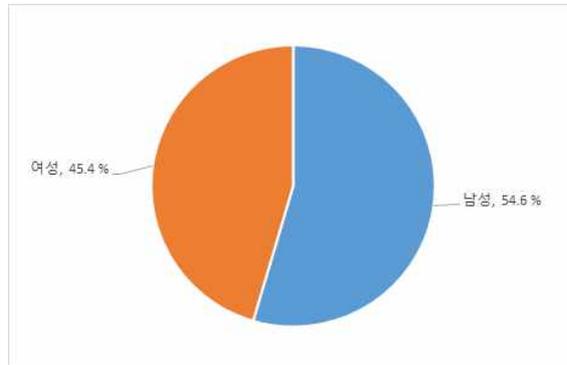
#### 가.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의 경우, 남성이 3,010건(54.6%), 여성이 2,507건(45.4%)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표 1-3-37>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건, 명, %)

성 별	건수(비율)		명수(비율)	
	남성	3,010	(54.6)	1,948
여성	2,507	(45.4)	1,585	(44.9)
계	5,517	(100.0)	3,533	(100.0)



[그림 1-3-14]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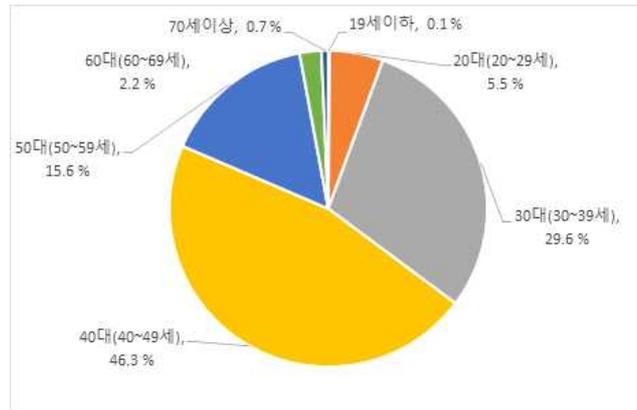
#### 나.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연령의 경우, 40대가 2,552건(46.3%)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가 1,634건(29.6%), 50대가 861건(15.6%), 20대가 301건(5.5%) 순으로 높게 보고되었다.

<표 1-3-38>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단위: 건, 명, %)

연 령 (만)	건수(비율)		명수(비율)	
	19세 이하	8	(0.1)	7
20대 (20~29세)	301	(5.5)	203	(5.7)
30대 (30~39세)	1,634	(29.6)	945	(26.7)
40대 (40~49세)	2,552	(46.3)	1,670	(47.3)
50대 (50~59세)	861	(15.6)	595	(16.8)
60대 (60~69세)	122	(2.2)	89	(2.5)
70세 이상	38	(0.7)	23	(0.7)
계	5,517	(0.0)	3,533	(0.0)



[그림 1-3-15]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 4)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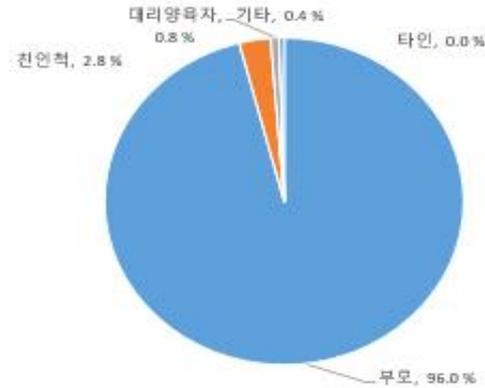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의 경우, 부모에 의한 재학대 사례가 5,294건 (96.0%)으로 월등히 높았다. 다음으로는 친인척에 의한 재학대 사례가 156건(2.8%), 대리양육자에 의한 재학대 사례 44건(0.8%)이었다.

<표 1-3-39>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

관 계		건수(비율)	
부모	친부	2,778	(50.4)
	친모	2,306	(41.8)
	계부	123	(2.2)
	계모	74	(1.3)
	양부	8	(0.1)
	양모	5	(0.1)
	소계	5,294	(96.0)
친인척	친조부	22	(0.4)
	친조모	53	(1.0)
	외조부	6	(0.1)
	외조모	28	(0.5)
	친인척	23	(0.4)
	형제·자매	24	(0.4)
	소계	156	(2.8)
대리양육자	부모의 동거인	36	(0.7)
	보육교직원	4	(0.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3	(0.1)
	위탁모	1	(0.0)
	소계	44	(0.8)

관 계		건수(비율)	
타인	이웃	1	(0.0)
	소계	1	(0.0)
기타		22	(0.4)
계		5,517	(100.0)



[그림 1-3-16]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5)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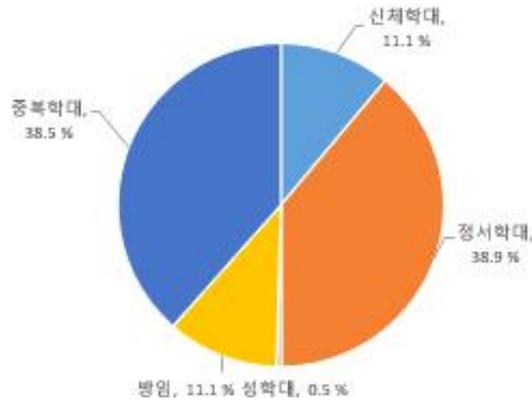
### 가.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재학대 사례에 대한 아동학대사례 유형의 경우, 정서학대 2,146건(38.9%), 중복학대가 2,122건(38.5%), 방임 613건(11.1%), 신체학대 610건(11.1%), 성학대 26건(0.5%)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40>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단위 : 건, %)

학대유형	건수(비율)	
신체학대	610	(11.1)
정서학대	2,146	(38.9)
성학대	26	(0.5)
방임	613	(11.1)
중복학대	2,122	(38.5)
계	5,517	(100.0)



[그림 1-3-17]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 6)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상황

### 가.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상황

2021년에 발생한 재학대 사례 5,517건을 바탕으로 피해아동의 전체 상황을 보호조치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또한, 분리된 이후 피해아동의 가정복귀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하였다.

<표 1-3-41>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상황 - 보호조치 유형별

(단위: 건, %)

피해아동 상황		
원가정보호(보호체계 유지)	4,106	(74.4)
분리보호(보호체계 변경)	1,360	(24.7)
사망	1	(0.0)
기타	50	(0.9)
계	5,517	(100.0)

- 원가정보호 : 피해아동을 실제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주양육자에 의해 계속적으로 보호 받고 있는 경우
- 분리보호 : 아동을 실제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주양육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경우, 종래 양육되던 환경을 떠나 다른 누군가(예: 친권자, 친족, 시설 등)에게 보호되는 경우 모두 해당
- 사망 : 아동학대사망, 아동학대 사망 외 일반사망을 포함하고 있음
- 기타 : 소년원 입소, 행방불명(예: 가출 등) 등으로 인해 아동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으로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의 분리보호 된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한 번이라도 분리된 경험이 있는 재학대 사례의 최초조치를 분리유형으로 살펴보니, 시설입소하여 보호하는 경우가 78.8%로 가장 높았고, 친족보호 18.5%, 가정위탁 1.6% 순이었다.

<표 1-3-42>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상황 - 분리보호 유형별

(단위: 건, %)

분리보호 (보호체계변경)	친족보호	251	(18.5)
	가정위탁	22	(1.6)
	시설입소	1,072	(78.8)
	의료기관 또는 요양소 입원입소	15	(1.1)
계		1,360	(100.0)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의 분리보호가 된 사례의 최종조치 상황을 살펴보았다. 분리보호 된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1,360건 중 201건(14.8%)은 가정복귀 하였고, 1,159건(85.2%)의 아동은 지속해서 분리보호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43>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상황 - 분리보호 후 보호 상황

(단위: 건, %)

분리보호 후 가정복귀		201	(14.8)
분리보호 (지속)	친족보호	266	(19.6)
	가정위탁	36	(2.6)
	시설입소	840	(61.8)
	의료기관 또는 요양소 입원입소	17	(0.9)
	소계	1,159	(85.2)
계		1,360	(100.0)

#### 나.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상황

재학대 사례에 학대행위자 상황 중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를 한 사례는 2,591건으로 나타났다.

<표 1-3-44>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상황

(단위: 건)

재학대 사례 건수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5,517	2,591

## 제4절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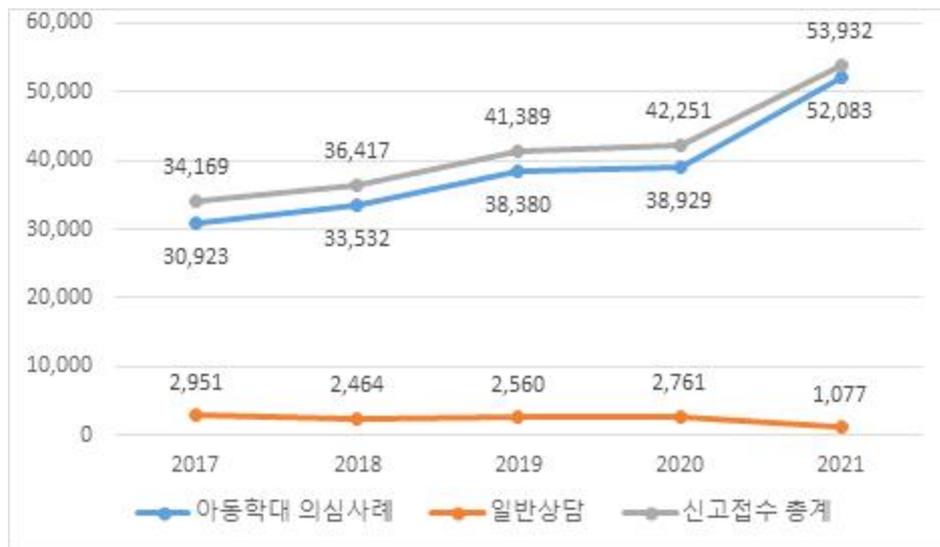
### 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 중 아동학대의심사례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다. 2021년의 경우 작년 대비 신고접수건수가 27.6% 크게 증가하였고, 전체 아동학대 신고건수 중 96.6%가 아동학대의심사례였다.

<표 1-4-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단위 : 건, %)

구분 연도	아동학대 의심사례		동일신고*		일반상담		해외발생 사례		계		전년 대비 증가율	비고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2017년	30,923	(90.5)	292	(0.9)	2,951	(8.6)	3	(0.0)	34,169	(100.0)	-	
2018년	33,532	(92.1)	420	(1.2)	2,464	(6.8)	1	(0.0)	36,417	(100.0)	6.6	
2019년	38,380	(92.7)	449	(1.1)	2,560	(6.2)	0	(0.0)	41,389	(100.0)	13.7	
2020년	38,929	(92.1)	557	(1.3)	2,761	(6.5)	4	(0.0)	42,251	(100.0)	2.1	
2021년	52,083	(96.6)	768	(1.4)	1,077	(2.0)	4	(0.0)	53,932	(100.0)	27.6	



[그림 1-4-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 최초 신고접수 이후에 동일한 학대내용(동일시점 및 동일행위)에 대한 신고가 다른 신고자를 통해 접수되는 경우

## 2) 연도별 신고자 유형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2018년 9,151건(27.3%), 2019년 8,836건(23.0%), 2020년 10,973건(28.2%)이었으나 2021년 23,372건(44.9%)이다.

신고의무자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까지는 신고의무자 중 초·중·고교직원이 가장 많은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신고하는 비율을 보였으나 2021년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비신고의무자 직군의 신고 분포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부모에 의한 신고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4-2> 연도별 신고자 유형

(단위 : 건, %)

신고자 유형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신 고 의 무 자	초·중·고교 직원	5,168 (16.7)	6,406 (19.1)	5,901 (15.4)	3,805 (9.9)	6,065 (11.6)
	의료인·의료기사	296 (1.0)	325 (1.0)	293 (0.8)	363 (0.9)	549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407 (1.3)	411 (1.2)	337 (0.9)	711 (1.8)	702 (1.3)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33 (0.1)	56 (0.2)	38 (0.1)	46 (0.1)	47 (0.1)
	보육교직원	313 (1.0)	213 (0.6)	448 (1.2)	182 (0.5)	241 (0.5)
	유치원교직원·강사	115 (0.4)	115 (0.3)	140 (0.4)	140 (0.4)	216 (0.4)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9 (0.0)	18 (0.1)	32 (0.1)	42 (0.1)	35 (0.1)
	소방구급대원	33 (0.1)	24 (0.1)	32 (0.1)	25 (0.1)	36 (0.1)
	성매매 피해시설 종사자	9 (0.0)	8 (0.0)	4 (0.0)	3 (0.0)	1 (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16 (0.1)	14 (0.0)	16 (0.0)	30 (0.1)	26 (0.0)
	가정폭력피해자보호 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169 (0.5)	283 (0.8)	125 (0.3)	210 (0.5)	79 (0.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71 (0.9)	211 (0.6)	266 (0.7)	347 (0.9)	230 (0.4)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20 (0.1)	25 (0.1)	-	-	-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	-	26 (0.1)	51 (0.1)	45 (0.1)

신고자 유형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819 (2.6)	-	-	632 (1.6)	7,493 (14.4)
아동복지전담공무원	27 (0.1)	72 (0.2)	200 (0.5)	984 (2.5)	1,097 (2.1)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	-	-	2,394 (6.1)	5,785 (11.1)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48 (0.2)	31 (0.1)	67 (0.2)	91 (0.2)	54 (0.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33 (0.1)	52 (0.2)	82 (0.2)	61 (0.2)	53 (0.1)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38 (0.1)	48 (0.1)	63 (0.2)	65 (0.2)	59 (0.1)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종사자	274 (0.9)	168 (0.5)	128 (0.3)	83 (0.2)	46 (0.1)	
응급구조사	2 (0.0)	0 (0.0)	1 (0.0)	1 (0.0)	3 (0.0)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357 (1.2)	276 (0.8)	286 (0.7)	280 (0.7)	212 (0.4)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종사자	43 (0.1)	121 (0.4)	105 (0.3)	87 (0.2)	117 (0.2)	
아이돌보미	8 (0.0)	11 (0.0)	11 (0.0)	21 (0.1)	26 (0.0)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인력	317 (1.0)	255 (0.8)	225 (0.6)	308 (0.8)	139 (0.3)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4 (0.0)	4 (0.0)	9 (0.0)	10 (0.0)	10 (0.0)	
입양기관 종사자	1 (0.0)	4 (0.0)	1 (0.0)	1 (0.0)	6 (0.0)	
<b>소 계</b>	<b>8,830 (28.6)</b>	<b>9,151 (27.3)</b>	<b>8,836 (23.0)</b>	<b>10,973 (28.2)</b>	<b>23,372 (44.9)</b>	
비 신 고 의 무 자	아동 본인	3,883 (12.6)	4,512 (13.5)	4,752 (12.4)	5,533 (14.2)	8,966 (17.2)
	부모	5,328 (17.2)	6,089 (18.2)	6,506 (17.0)	6,284 (16.1)	10,631 (20.4)
	형제,자매	359 (1.2)	403 (1.2)	307 (0.8)	443 (1.1)	657 (1.3)
	친인척	738 (2.4)	607 (1.8)	647 (1.7)	653 (1.7)	786 (1.5)
	이웃·친구	1,963 (6.3)	1,859 (5.5)	1,718 (4.5)	1,945 (5.0)	3,660 (7.0)
	경찰	645 (2.1)	406 (1.2)	291 (0.8)	216 (0.6)	243 (0.5)

신고자 유형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종교인	24 (0.1)	18 (0.1)	24 (0.1)	28 (0.1)	23 (0.0)
사회복지관련종사자	323 (1.0)	933 (2.8)	959 (2.5)	367 (0.9)	239 (0.5)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종사자	6,881 (22.3)	7,756 (23.1)	12,389 (32.3)	10,254 (26.3)	-	
의료사회복지사	79 (0.3)	66 (0.2)	25 (0.1)	39 (0.1)	32 (0.1)	
낮선 사람	685 (2.2)	443 (1.3)	597 (1.6)	611 (1.6)	1,138 (2.2)	
익명	271 (0.9)	228 (0.7)	275 (0.7)	401 (1.0)	729 (1.4)	
법 원	-	34 (0.1)	68 (0.2)	55 (0.1)	103 (0.2)	
기 타	914 (3.0)	1,027 (3.1)	986 (2.6)	1,127 (2.9)	1,504 (2.9)	
<b>소 계</b>	<b>22,093 (71.4)</b>	<b>24,381 (72.7)</b>	<b>29,544 (77.0)</b>	<b>27,956 (71.8)</b>	<b>28,711 (55.1)</b>	
계	30,923 (100.0)	33,532 (100.0)	38,380 (100.0)	38,929 (100.0)	52,083 (100.0)	

- ※ 2009년부터 유치원교직원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시설종사자 항목은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보육교직원,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로 구분하여 집계함.
- ※ 2012년 8월 5일, 전부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에 따라 신고의무자 직군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건강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종사자가 추가됨(아동복지법 제 25조 의거)
- ※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에 따라 신고의무자 직군에 아이돌보미,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인력이 추가됨.(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의거)
- ※ 2016년 11월 30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에 따라 신고의무자 직군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입양기관 종사자가 추가됨. 또한 의료인과 의료기사,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종사자가 통합되었음.(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의거)
- ※ 2016년 9월 23일, 아동복지법 시행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복지시설로 편입되면서 신고의무자 직군에 속하였으나, 이후 아동학대처벌법 개정(2016.11.30.시행)으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신고의무자 직군에서 제외됨.
- ※ 기존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7항에 규정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삭제로 인해 기존 신고의무자 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항목을 삭제하고 비신고의무자의 사회복지관련종사자 항목에 통합하였음.
- ※ 2019.7.16.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는 신고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아동권리보장원을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항목에 통합하였음.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종사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시행일(2020. 10. 1.)부터 신고의무자로 변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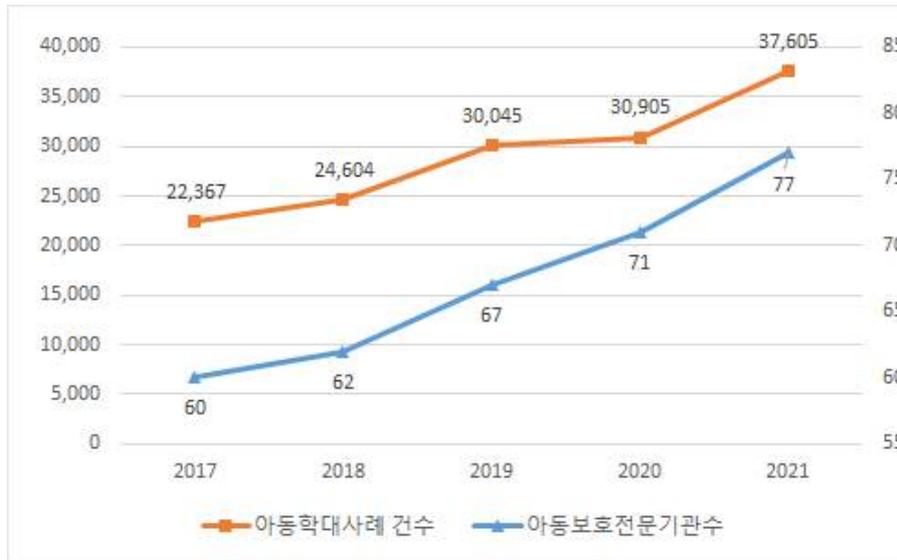
### 3)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1년 아동학대사례는 전년 대비 21.7%로 크게 증가하였다. 기관수는 2017년 60개소에서 2021년 77개소로 17개소 증가했다.

<표 1-4-3>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단위: 건, %, 개소)

구분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아동학대사례	건수		22,367	24,604	30,045	30,905	37,605
	증가율		19.6	10.0	22.1	2.9	21.7
아동보호전문기관	기관수		60	62	67	71	77
	증가 기관수		1	2	5	4	6



[그림 1-4-2]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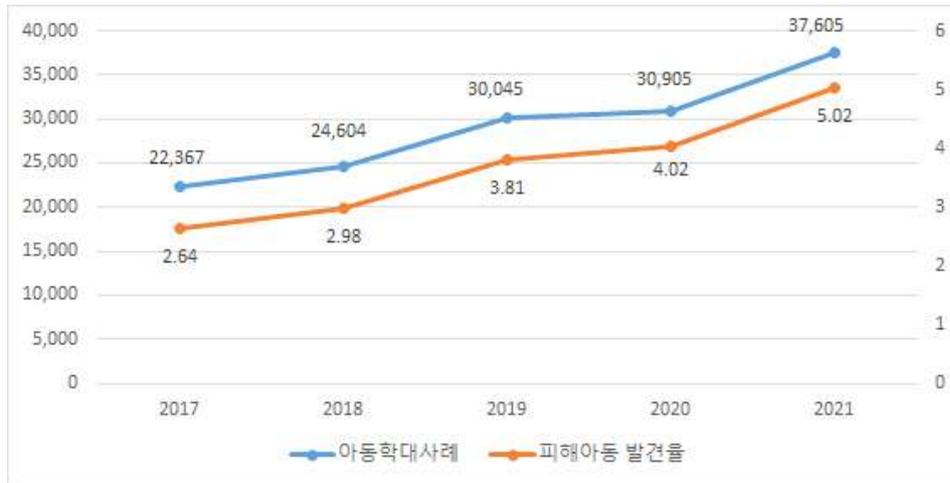
#### 4) 연도별 피해아동 발견율

추계 아동 인구(만0세~17세)를 기준으로 연도별로 발견율을 비교한 결과, 추계 아동 인구는 감소하고 아동학대사례는 증가하면서 피해아동 발견율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4-4> 연도별 피해아동 발견율

(단위: 명, 건, %)

구분 \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추계아동인구* (만 0~17세)	8,467,386	8,255,490	7,888,218	7,678,893	7,487,738
아동학대사례	22,367	24,604	30,045	30,905	37,605
피해아동 발견율	2.64	2.98	3.81	4.02	5.02



[그림 1-4-3] 연도별 피해아동 발견율

\* 2017년~2021년 발견율의 경우 통계청의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시도를 활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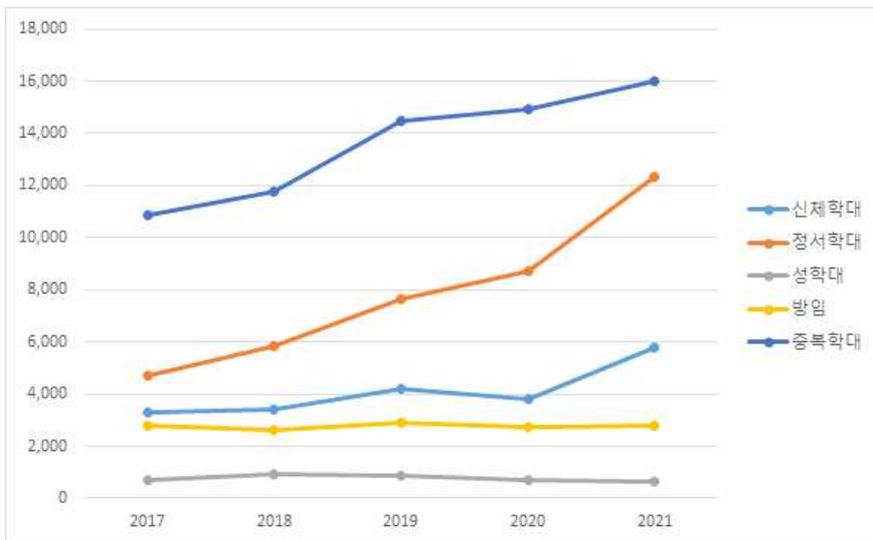
### 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여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부터 중복학대와 정서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서학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5개년 연속 중복학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 1-4-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단위 : 건, %)

학대유형 연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 대		방 입		중복학대		계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2017년	3,285	(14.7)	4,728	(21.1)	692	(3.1)	2,787	(12.5)	10,875	(48.6)	22,367	(100.0)
2018년	3,436	(14.0)	5,862	(23.8)	910	(3.7)	2,604	(10.6)	11,792	(47.9)	24,604	(100.0)
2019년	4,179	(13.9)	7,622	(25.4)	883	(2.9)	2,885	(9.6)	14,476	(48.2)	30,045	(100.0)
2020년	3,807	(12.3)	8,732	(28.3)	695	(2.2)	2,737	(8.9)	14,934	(48.3)	30,905	(100.0)
2021년	5,780	(15.4)	12,351	(32.8)	655	(1.7)	2,793	(7.4)	16,026	(42.6)	37,605	(100.0)



[그림 1-4-4]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 6)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2017년부터 계속해서 약 75% 이상을 차지하면서 2021년에는 83.7%의 비율을 보였다.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2017년 3,343건(14.9%)에서 2019년 4,986건(16.6%)까지 증가하였다가 2020년 2,930건(9.5%), 2021년 3,609건(9.6%)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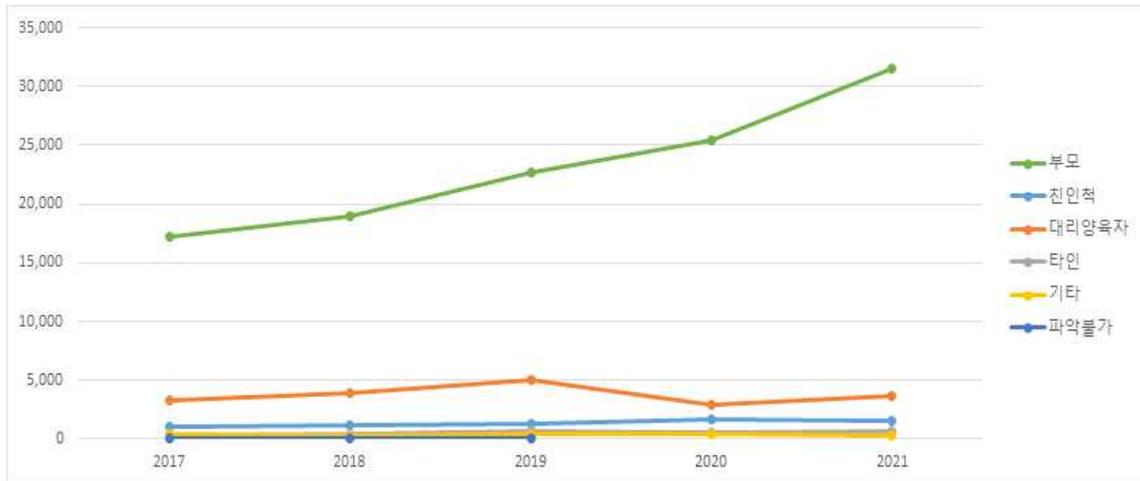
<표 1-4-6>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

관계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부 모	친부	9,562 (42.8)	10,747 (43.7)	12,371 (41.2)	13,471 (43.6)	16,944 (45.1)
	친모	6,824 (30.5)	7,338 (29.8)	9,342 (31.1)	10,945 (35.4)	13,380 (35.6)
	계부	401 (1.8)	480 (2.0)	557 (1.9)	578 (1.9)	702 (1.9)
	계모	341 (1.5)	297 (1.2)	336 (1.1)	312 (1.0)	340 (0.9)
	양부	28 (0.1)	36 (0.1)	58 (0.2)	40 (0.1)	68 (0.2)
	양모	21 (0.1)	22 (0.1)	36 (0.1)	34 (0.1)	52 (0.1)
	소계	17,177 (76.8)	18,920 (76.9)	22,700 (75.6)	25,380 (82.1)	31,486 (83.7)
친 인 척	친조부	128 (0.6)	147 (0.6)	194 (0.6)	231 (0.7)	193 (0.5)
	친조모	237 (1.1)	229 (0.9)	304 (1.0)	374 (1.2)	383 (1.0)
	외조부	61 (0.3)	74 (0.3)	76 (0.3)	131 (0.4)	99 (0.3)
	외조모	127 (0.6)	118 (0.5)	143 (0.5)	230 (0.7)	177 (0.5)
	친인척	328 (1.5)	352 (1.4)	390 (1.3)	429 (1.4)	435 (1.2)
	형제, 자매	186 (0.8)	194 (0.8)	225 (0.7)	266 (0.9)	230 (0.6)
	소계	1,067 (4.8)	1,114 (4.5)	1,332 (4.4)	1,661 (5.4)	1,517 (4.0)
대 리 양 육 자	부모의 동거인	247 (1.1)	270 (1.1)	363 (1.2)	444 (1.4)	403 (1.1)
	유치원 교직원	281 (1.3)	189 (0.8)	155 (0.5)	118 (0.4)	140 (0.4)
	초·중·고교 직원	1,345 (6.0)	2,060 (8.4)	2,154 (7.2)	882 (2.9)	1,089 (2.9)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217 (1.0)	176 (0.7)	320 (1.1)	208 (0.7)	319 (0.8)
	보육 교직원	840 (3.8)	818 (3.3)	1384 (4.6)	634 (2.1)	1,221 (3.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285 (1.3)	313 (1.3)	408 (1.4)	556 (1.8)	217 (0.6)
	기타 시설 종사자	60 (0.3)	27 (0.1)	63 (0.2)	12 (0.0)	93 (0.2)
	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	32 (0.1)	33 (0.1)	87 (0.3)	14 (0.0)	58 (0.2)
	위탁부	4 (0.0)	7 (0.0)	3 (0.0)	4 (0.0)	6 (0.0)
	위탁모	17 (0.1)	2 (0.0)	8 (0.0)	16 (0.1)	17 (0.0)
	아이돌보미	15 (0.1)	11 (0.0)	41 (0.1)	42 (0.1)	46 (0.1)
	소계	3,343 (14.9)	3,906 (15.9)	4,986 (16.6)	2,930 (9.5)	3,609 (9.6)
	타	이웃	86	146	224	211

관계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인		(0.4)	(0.6)	(0.7)	(0.7)	(0.5)
	낮선 사람	208 (0.9)	214 (0.9)	439 (1.5)	354 (1.1)	458 (1.2)
	소계	294 (1.3)	360 (1.5)	663 (2.2)	565 (1.8)	658 (1.7)
기타		441 (2.0)	304 (1.2)	364 (1.2)	369 (1.2)	335 (0.9)
파악불가		45 (0.2)	-	-	-	-
<b>계</b>		<b>22,367</b> <b>(100.0)</b>	<b>24,604</b> <b>(100.0)</b>	<b>30,045</b> <b>(100.0)</b>	<b>30,905</b> <b>(100.0)</b>	<b>37,605</b> <b>(100.0)</b>

※ 학대행위자 수감 및 조사거부, 정보부족 등의 경우 학대조사를 통한 정보 취득에 제한사항 발생하여 파악불가 값이 발생할 수 있음.



[그림 1-4-5]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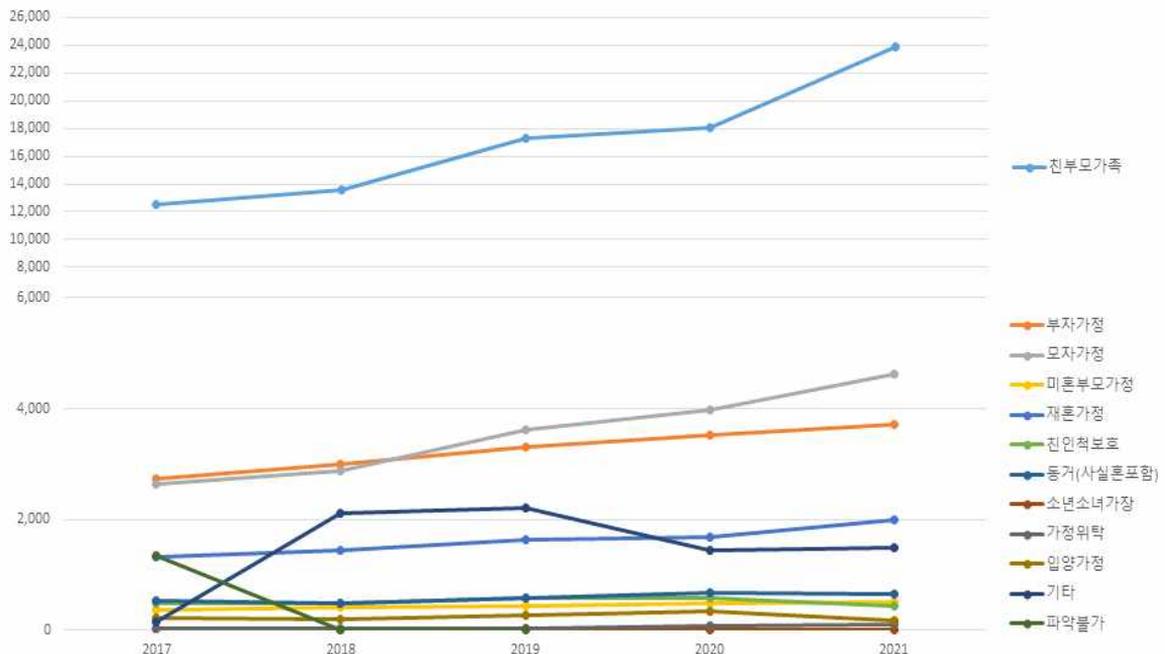
## 7)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친부모가정 형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친부모 가정 외 형태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중은 낮으나, 실질적인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표 1-4-7>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가족유형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친부모가정	12,489 (55.8)	13,546 (55.1)	17,324 (57.7)	18,059 (58.4)	23,838 (63.4)
부자가정	2,732 (12.2)	2,997 (12.2)	3,311 (11.0)	3,521 (11.4)	3,707 (9.9)
모자가정	2,632	2,865	3,621	3,977	4,618

가족유형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1.8)	(11.6)	(12.1)	(12.9)	(12.3)
미혼부·모가정	361 (1.6)	404 (1.6)	424 (1.4)	487 (1.6)	506 (1.3)
재혼가정	1,318 (5.9)	1,435 (5.8)	1,627 (5.4)	1,686 (5.5)	1,980 (5.3)
친인척보호	487 (2.2)	483 (2.0)	583 (1.9)	582 (1.9)	443 (1.2)
동거(사실혼포함)	532 (2.4)	490 (2.0)	565 (1.9)	668 (2.2)	644 (1.7)
소년소녀가정	16 (0.1)	8 (0.0)	15 (0.0)	-	-
가정위탁	38 (0.2)	27 (0.1)	23 (0.1)	69 (0.2)	90 (0.2)
입양가정	56 (0.3)	44 (0.2)	84 (0.3)	66 (0.2)	117 (0.3)
시설보호	217 (1.0)	187 (0.8)	265 (0.9)	340 (1.1)	169 (0.4)
기 타	137 (0.6)	2,118 (8.6)	2,203 (7.3)	1,450 (4.7)	1,493 (4.0)
파악불가	1,352 (6.0)	-	-	-	-
<b>계</b>	<b>22,367</b> <b>(100.0)</b>	<b>24,604</b> <b>(100.0)</b>	<b>30,045</b> <b>(100.0)</b>	<b>30,905</b> <b>(100.0)</b>	<b>37,605</b> <b>(100.0)</b>



[그림 1-4-6]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 제2장 아동학대 사례분석

### 제1절 아동학대 사망사례 분석

#### 1. 아동학대 사망사례 현황

2021년에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총 40명으로, 전체 아동학대 피해아동 중 약 0.15%이다.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사례 중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학대로 아동이 사망했다고 판단 또는 추정되는 사례 및 동 기간 동안 ‘아동학대치사죄’, ‘아동살인죄’, ‘아동 살해 후 자살’ 사건을 전국 각 경찰청에서 취합하였다. 또한 언론에서 인지한 9개 사례도 포함하였다. 그 결과, 총 40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사례를 발견하였다.

<표 2-1> 아동학대 사망사례 발생 현황

(단위: 명, %)

연도	사망아동 인원	아동학대 피해아동 명수 중 사망아동 명수 비율
2017	38	0.21
2018	28	0.14
2019	42	0.19
2020	43	0.19
2021	40	0.15

※ 아동학대 사망사례 추출기준

- 아동학대 사망으로 신고접수된 아동과 경찰로부터 집계한 사망 아동, 기타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한 사망 아동 중 사망일이 2021년(1.1~12.31)인 아동학대 사망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함.
- 아동보호전문기관 기개입 사례, 개입 이력 없이 사망신고를 통해 최초 인지한 사례를 모두 포함하였음.
- 타 기관과 집계기준(죄명, 행위자 등)이 다른 경우 통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사망 아동 부검사례 분석(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자료)은 아동학대로 의심한 경우도(영아급사중후군 등) 사망통계에 포함하기 때문에 통계 결과가 다름

## 1) 사망사례 피해아동의 일반적 특성

### 가. 사망사례 피해아동 성별

사망사례의 피해아동 성별은 남아가 17명(42.5%), 여아가 23명(57.5%)이다.

<표 2-2> 사망사례 피해아동 성별

(단위: 명, %)

구분		사망사례 피해아동	
		인원	비율
피해아동 성별	남아	17	42.5
	여아	23	57.5
총계		40	100.0

### 나. 사망사례 피해아동 연령

사망사례 피해아동의 연령의 경우 만 1세 미만이 13명(32.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영아인 만 2세 이하 연령대는 19명(47.5%)으로 영아가 피해아동의 약 절반을 차지하였다.

<표 2-3> 사망사례 피해아동 연령

(단위: 명, %)

구분		사망사례 피해아동	
		인원	비율
피해아동 연령(만)	1세 미만	13	32.5
	1세	2	5.0
	2세	4	10.0
	3세	7	17.5
	4세	1	2.5
	5세	3	7.5
	6세	1	2.5
	8세	3	7.5
	11세	3	7.5
	12세	1	2.5
	13세	1	2.5
	15세	1	2.5
총계		40	100.0

### 다. 사망사례 피해아동 교육기관

영아가 피해아동의 절반 이상인만큼 사망아동이 교육기관 등을 다니지 않은 경우가 19명(47.5%)으로 많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녔던 아동은 7명(17.5%)인데, 이 중 한 명의 피해아동의 사망 발생 장소는 어린이집이었다. 또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아동은 6명(15.0%), 중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아동은 2명(5.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사망사례 피해아동 교육기관

(단위: 명, %)

구분		사망사례 피해아동	
		인원	비율
피해아동 교육기관	다니지 않음	19	47.5
	어린이집	6	15.0
	유치원	1	2.5
	초등학교	6	15.0
	중학교	2	5.0
	기타(자료 없음 등)	6	15.0
총계		40	100.0

## 2) 사망사례 피해아동의 환경적 특성

### 가. 사망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사망사례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은 친부모가정이 19명(47.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부자가정·모자가정·미혼부/모가정 등 한부모 가정은 9명(22.5%)이다.

<표 2-5> 사망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단위: 명, %)

구분		사망사례 피해아동	
		인원	비율
피해아동 가족유형	친부모가정	19	47.5
	부자가정	6	15.0
	모자가정	1	2.5
	미혼부·모가정	2	5.0
	입양가정	1	2.5
	재혼가정	3	7.5
	친인척보호	1	2.5
	기타(자료 없음 등)	7	17.5
총계		40	100.0

- 친부모가정: 적법한 혼인절차에 의한 부모와 부모 사이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
- 부자·모자가정: 부모의 이혼 및 사별 등의 사유로 부와 자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
- 미혼부·모가정: 적법한 혼인절차 없이 자녀를 출산하여 부와 자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
- 입양가정: 입양절차를 통해 양부모-양자의 관계를 맺은 가족 형태
- 재혼가정: 이혼 혹은 사별 이후 혼인관계를 통해 재구성된 가족 형태
- 친인척보호가정: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게 보호되는 가족 형태

### 나. 사망사례 피해아동 가구소득

사망사례 피해아동 월 가구소득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행복e음)에도 누락되어 있거나 판결문 등에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60.0%). 확인 가능한 16건 중에서는 300만 원 이상이 5명(12.5%)으로 가장 많았다.

<표 2-6> 사망사례 피해아동 가구소득

(단위: 명, %)

구분		사망사례 피해아동	
		인원	비율
피해아동 월 가구소득	소득 없음	3	7.5
	15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2	5.0
	200만 원 이상-250만 원 미만	3	7.5
	25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3	7.5
	300만 원 이상	5	12.5
	기타(자료 없음 등)	24	60.0
총계		40	100.0

#### 다. 사망사례 피해아동 국적 및 다문화가족 여부

사망사례 피해아동 39명은 내국인이나, 피해아동은 1명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었다. 내국인 39명은 귀화 여부에 해당이 없으며, 미국 국적의 피해아동은 귀화하지 않았다. 또한 내국인 피해아동 중 1명만 다문화가족이었고, 미국 국적의 피해아동 다문화가족 여부는 해당 사항 없다.

<표 2-7> 사망사례 피해아동 국적 및 다문화가족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망사례 피해아동	
		인원	비율
피해아동 내국인 여부	내국인	39	97.5
	외국인	1	2.5
계		40	100.0
피해아동 귀화 여부	해당 없음	39	97.5
	귀화하지 않음	1	2.5
계		40	100.0
피해아동 다문화가족 여부	일반	38	95.0
	다문화가족	1	2.5
	해당 없음	1	2.5
계		40	100.0

### 3)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의 일반적 특성

#### 가.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학대행위자는 총 54명\* 중 남성이 25명(46.3%), 여성이 29명(53.7%)이었다.

\* 하나의 사례에 행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가 있어 아동학대 사망 피해아동 40명보다 더 많은 54명임

<표 2-8>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명, %)

구분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인원	비율
성별	남성	25	46.3
	여성	29	53.7
총계		54	100.0

나.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의 연령은 20대와 30대가 각각 18명(33.3%)씩으로 가장 많았고, 40대는 12명(22.2%)이었다. 또한 60대는 3명(5.6%)이고 70대는 1명(1.9%)으로, 1명은 산모도우미이고 3명은 피해아동의 조모와 조부이다.

<표 2-9>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단위: 명, %)

구분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인원	비율
학대행위자 연령(만)	19세 이하	1	1.9
	20대	18	33.3
	30대	18	33.3
	40대	12	22.2
	50대	1	1.9
	60대	3	5.6
	70대	1	1.9
계		54	100.0

다.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최종학력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의 최종학력은 미처 조사되지 못한 사례가 많았지만, 파악 가능한 학대행위자 14명 중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이 6명(11.1%)으로 가장 많았다.

<표 2-10>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최종학력

(단위: 명, %)

구분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인원	비율
학대행위자 최종학력	무학	1	1.9
	중등졸업	1	1.9
	고등중퇴	1	1.9
	고등졸업	6	11.1
	대학중퇴	1	1.9
	대학졸업(전문대졸업 포함)	4	7.4
	기타(자료 없음 등)	40	74.1
총계		54	100.0

#### 라.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직업 유형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의 직업 역시 피의자신문조서나 판결문 등을 통해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약 1/4이었다. 확인이 가능했던 사례 중에서는 직업이 없는 경우가 11명(20.4%)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가 7명(13.0 %)으로 나타났다.

<표 2-11>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직업 유형

(단위: 명, %)

구분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인원	비율
학대행위자 직업 유형	사무종사자	1	1.9
	기술공 및 준전문가	1	1.9
	단순노무종사자	5	9.3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7	13.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5	9.3
	전문직	2	3.7
	주부	3	5.6
	무직	11	20.4
	기타	6	11.1
	자료 없음	13	24.1
총계		54	100.0

#### 4)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의 환경적 특성

##### 가.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월 소득\*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가구소득의 경우에도 자료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30명(55.6%)이었지만, 파악이 가능했던 학대행위자의 월 가구소득 자료 중에서는 소득이 없는 경우가 12명(22.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300만 원 이상이 4명(7.4%)으로 많았다.

<표 2-12>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월 소득

(단위: 명, %)

구분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인원	비율
학대행위자 월 가구소득	소득 없음	12	22.2
	50만 원 미만	2	3.7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	2	3.7
	15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2	3.7
	200만 원 이상-250만 원 미만	0	0.0
	25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2	3.7
	300만 원 이상	4	7.4
	기타(자료 없음 등)	30	55.6
총계		54	100.0

\* 기초생활보장수급비 등의 공적지원은 가구소득에서 제외됨.

## 나.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국적 및 다문화가족 여부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총 54명 중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내국인이었으며, 외국인 2명은 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중 다문화가족은 1명이었고, 나머지 1명은 결혼이민자였으나 이혼하였으므로 다문화가족 여부에 해당 사항이 없다.

<표 2-13>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국적 및 다문화가족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인원	비율
학대행위자 내국인 여부	내국인	52	96.3
	외국인	2	3.7
계		54	100.0
학대행위자 귀화 여부	해당 없음	52	96.3
	귀화 안 함	2	3.7
계		54	100.0
학대행위자 다문화가족 여부	일반	52	96.3
	다문화가족	1	1.9
	해당 없음	1	1.9
계		54	100.0

## 5)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가.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동거 여부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동거 여부를 살펴본 결과, 학대행위자 총 54명 중 6명을 제외한 48명(88.9%)은 아동과 동거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해아동과 동거하지 않았던 학대행위자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2명, 친모의 전 동거인 1명과 그의 지인 1명, 피해아동을 친척집에 맡겨두고 따로 살며 학대를 방치한 친모 1명, 피해아동을 잠시 돌보던 친부의 지인 1명이다.

<표 2-14>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동거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인원	비율
동거 여부	동거	48	88.9
	비동거	6	11.1
총계		54	100.0

## 나.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사망사례 학대행위자는 피해아동의 친부모인 경우가 37명(68.5%)으로 가장 많았다. 친모가 19명(35.2%), 친부는 18명(33.3%)이었다. 학대행위자 중 친인척은 5명(9.3%)이었으며, 대리양육자는 4명(7.4%)이었는데 이 중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보육교직원도 2명(3.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5>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단위: 명, %)

관계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인원	비율
부모	친부	18	33.3
	친모	19	35.2
	양부	1	1.9
	양모	1	1.9
	계부	1	1.9
	계모	2	3.7
	소계	42	77.8
친인척	조부	1	1.9
	조모	2	3.7
	이모부	1	1.9
	이모	1	1.9
	소계	5	9.3
대리양육자	부,모의 동거인	1	1.9
	보육교직원	2	3.7
	산모도우미	1	1.9
	소계	4	7.4
기타(부,모의 전 동거인, 친부의 지인, 낯선 사람)		3	5.6
계		54	100.0

## 6) 사망사례 발생 현황

### 가. 사망사례 지역별 발생 현황\*

지역별 사망사례 발생 현황을 살펴본 결과, 사망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 12명(30.0%)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사망사례가 많았던 지역은 인천광역시 5명(12.5%)으로 나타났다.

\* 실제 사망 발생지와 피해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다를 수 있음.

<표 2-16> 사망사례 지역별 발생 현황

(단위: 명, %)

구분	사망사례 피해아동		
	인원	비율	
시도명	서울특별시	2	5.0
	부산광역시	3	7.5
	인천광역시	5	12.5
	대전광역시	3	7.5
	울산광역시	2	5.0
	경기도	12	30.0
	충청북도	3	7.5
	충청남도	2	5.0
	전라북도	2	5.0
	전라남도	1	2.5
	경상남도	4	10.0
	제주도	1	2.5
총계	40	100.0	

나. 사망사례 신고자 유형

사망사례의 신고는 의료기관의 의사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가 10명(25.0%)이었고, 나머지는 비신고의무자 30명(75.0%)에 의한 신고였다.

<표 2-17> 사망사례 신고자 유형

(단위: 명, %)

구분	사망사례 피해아동		
	인원	비율	
신고자 유형	신고의무자	10	25.0
	비신고의무자	30	75.0
총계	40	100.0	

7) 사망사례의 아동학대 유형\*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학대유형을 살펴본 결과, 신체학대가 25명(46.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방임이 16명(29.6%)으로 나타났다.

\* 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사례판단 결과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재판에서 확정된 죄명과는 다를 수 있음.  
 \*\* 하나의 사례에 행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가 있어 아동학대 사망 피해아동 40명보다 더 많은 54명임.

<표 2-18> 사망사례의 아동학대 유형

(단위: 명, %)

구분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인원	비율
방임	16	29.6
신체	25	46.3
신체·정서	5	9.3
신체·방임	2	3.7
신체·정서·방임	4	7.4
신체·정서·방임·성	1	1.9
정서	1	1.9
총계	54	100.0

### 8)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재판(사건처리) 결과\*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재판(사건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다. 54명의 학대행위자 중 집행 유예를 받은 행위자는 2명(3.7%)이었고, 징역 1년 초과~징역 5년 이하는 9명(16.7%), 징역 5년 초과~징역 10년 이하는 4명(7.4%), 징역 10년 초과~징역 15년 이하는 5명(9.3%), 징역 20년 초과는 9명(16.7%)이었다. 또한 현재 재판 중인 학대행위자는 8명(14.8%), 불기소 또는 기소중지는 3명(5.6%), 내사종결은 10명(18.5%), 수사 중은 3명(5.6%)이며, 1명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지되어 가정법원에 송치(1.9%)되었다. 내사종결 중 대부분은 자녀 살해 후 자살로 학대행위자가 사망한 경우이다.

<표 2-19>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재판(사건처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인원	비율	
집행유예	2	3.7	
양형	1년 초과-5년 이하	9	16.7
	5년 초과-10년 이하	4	7.4
	10년 초과-15년 이하	5	9.3
	15년 초과-20년 이하	0	0.0
	20년 초과-25년 이하	2	3.7
	25년 초과-30년 이하	6	11.1
	무기징역	1	1.9
재판 중	8	14.8	
불기소/기소중지	3	5.6	
내사종결	10	18.5	
수사 중	3	5.6	
기타**	1	1.9	
총계	54	100.0	

\* 2022. 8. 10. 확정된 재판 기준

\*\* 가정법원 송치

# 부록

## 1. 용어 설명

### [일반사항]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제1조)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피해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제8호) 혹은 아동학대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아동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6항)

**(아동)학대행위자** :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5호),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에 따라 아동을 가해한 자

**아동보호전문기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개정(안)(2019.7.16. 시행)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됨.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명칭 변경됨.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조사 및 개입 등의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조사공공화 시행(2020.10.1.)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조사는 지자체에서 수행함

### [신고접수]

**신고접수(사례)** : 상담 및 신고 목적으로 접수된 모든 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 신고접수 당시 아동학대로 의심되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로 해당 사례들은 신고접수를 받은 후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함

**일반상담(사례)** : 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된 사례 중 아동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성인이 아닌 자에 의해 발생한 사례, 아동학대가 의심되지만 정보 부족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사례

**동일신고(사례)** : 최초 신고접수 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례와 동일한 학대피해의심내용이 다른 신고자들에 의해 신고접수 되는 사례

**재학대** : 재학대는 최근 5년간 신고접수 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다시 기준연도에 신고접수 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신고의무자** :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가진 자로 신고의무자에는 초·중·고교 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강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소방구급대원, 성매매 피해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복지시설 종사자, 아동권리보장원·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종사자 등 25개 직군이 포함됨(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비신고의무자** :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모든 자

### [아동학대조사 및 사례판단]

**아동학대조사** : 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된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하여 학대 발생 여부와 위험 정도를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

**사례판단** : 아동학대조사를 통해 수집된 아동학대사례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 일반사례로 분류 및 결정하는 과정. 2020년 10월 1일 이후로 조기지원사례는 일반사례로 분류됨

**아동학대사례** : 사례판단 유형 중 하나로 학대의 정황이 뚜렷하고 아동학대로 판단할 만한 증거 또는 진술이 뒷받침 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일반사례** : 사례판단 유형 중 하나로 신고접수 시 아동학대의심사례로 판단하였으나 현장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

**친부모가정** : 적법한 혼인절차에 의한 부모와 부모 사이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

**부자·모자 가정** : 부모의 이혼 및 사별 등의 사유로 부와 자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

**미혼부·모 가정** : 적법한 혼인절차 없이 자녀를 출산하여 부와 자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

**재혼 가정** : 이혼 혹은 사별 이후 혼인관계를 통해 재구성된 가족 형태

**친인척보호가정**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게 보호되는 가족 형태

**동거(사실혼 포함) 가정** : 적법한 혼인절차 없이 동일한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가족 형태

**가정위탁** : 가정위탁절차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여 보호하는 형태

**입양가정** : 입양절차를 통해 양부모-양자의 관계를 맺은 가족 형태

**시설보호** : 보호조치를 통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하는 형태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계부·계모** : 재혼을 통하여 맺어진 부 또는 모

**양부·양모** : 입양절차를 통해 맺어진 부 또는 모

**위탁부·위탁모** : 가정위탁절차를 통해 맺어진 부 또는 모

**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손, 발 또는 도구로 때림, 물건을 던짐, 꼬집거나 물어뜯음, 신체 일부를 강압적으로 압박하거나 아동을 던지는 행위 등이 포함됨

**정서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소리 지름, 무시 또는 모욕, 가정폭력에 노출,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이 포함됨

**성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함. 성기노출, 신체 및 성기 추행, 성기삽입,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됨

**방임**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처리를 하지 않거나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등이 포함됨

**중복학대**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형의 두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발생한 학대 유형

### [조치결과관리]

**조치결과** : 사례판단을 근거로 피해아동의 안전 및 회복과 학대행위자의 재학대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결정을 취하는 것

**응급조치** :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범죄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현저·급박한 경우 피해아동 등에 대하여 즉시 취할 수 있는 긴급 조치

**임시조치** :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로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하는 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 피해아동에 대한 가정법원의 조치, 응급조치 이후 피해아동 분리보호의 근거 마련을 위하여 청구함

**임시보호명령** :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의 결정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전까지 임시로 피해아동보호명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아동학대처

벌법 제52조)

**원가정보호** : 생물학적·법적 친권자 및 양육권자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양육하는 주양육자가 아동을 보호하는 형태. 아동복지법 제4조 3항에 따라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또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분리보호** : 피해아동을 실제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주양육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

**가정 복귀** : 아동학대로 분리보호 된 아동을 다시 원가정으로 배치하는 것

**사망사례** :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

**고소** : 범죄 피해자 및 그의 법정 대리인과 같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고발** :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사건처리** : 고소, 고발, 인지수사, 특례법 임시조치 등 수사진행 및 수사 미진행 모두를 포함한 아동학대 사법절차를 의미함

**보호처분** : 사회보호 및 특별 예방적 목적으로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가하는 보안처분의 일종.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치료감호 등을 부과하는 것

**형사처분** : 범죄를 이유로 하여 형벌 즉 구류, 금고, 징역 등을 부과하는 것

### [서비스제공]

**상담서비스** : 상담서비스, 집단상담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기관과 실시한 기관상담서비스, 주변인과 실시한 상담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의료지원** :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포함한 서비스

**심리치료지원** : 심리검사, 미술치료, 놀이치료 등을 포함한 서비스

**가족기능강화** : 가정지원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기관 연결, 공적지원 연결을 포함한 서비스

**학습 및 보호지원** : 학대피해아동쉼터 입·퇴소 및 절차지원, 학대피해아동 분리보호 및 절차지원, 출결 및 비밀전학 처리 지원을 포함하는 서비스

**사건처리지원** : 학대행위자가 고소·고발 또는 응급조치에 따른 수사개시 등으로

사건처리가 진행되는 경우 수사 또는 재판진행과정에서 피해아동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

**행위자수탁프로그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임시조치 또는 조건부기소유예, 보호처분,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결정을 받아 검찰·법원으로 부터 상담·교육 위탁 처분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피해아동수탁프로그램** :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한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사례종결** : 사례개입을 마무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피해아동 및 가족의 관계를 정리하여 최종적인 서비스 종결에 이르게 하는 것